

가정상담

2023 | 04
통권 476호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ISSN 1227-7568

전국 어디에서나
가정법률 관련 **화상상담**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세요
www.lawhome.or.kr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본소의 2023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3일 열려 2022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모든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관련기사 3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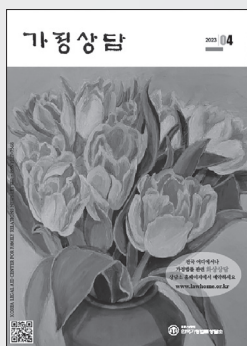
▶ 지난 3월 17일 본소 강당에서 2023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업무협력기관 워크숍'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본소와 전국업무협력기관은 앞으로도 법률구조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관련기사 35면)



◀ 본소의 2023년도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회가 지난 3월 29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직원재교육을 겸해 이루어졌다. (관련기사 35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청렴, 말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4 • 이달의 메시지

6 • 특집 ❶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년도 소송구조 분석 - 양육비

18 • 특집 ❷ | 등록동반자관계는 혼인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31 • 가정폭력상담실

32 • 어떻게 할까요

33 • 결혼과 인생(231) 영화 이야기

애프터썸 _ 김용언

34 • 좋은 책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신형철 산문

35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37 • 소송구조

※ 특집기사가 넘쳐 기획기사는 쉬어 갑니다.



전국업무협력기관 모임을 마치고 -

변화하고 발전하는 법률구조 사업의 현주소 확인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지난 연말 시작한 상담소 홍보 영화의 리뉴얼 작업을 마쳤습니다. 2017년에 제작한 상담소 영화는 그간 누적된 상담 통계와 변화 발전하는 상담소의 다양한 사업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새롭게 영화를 만들까도 생각했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상담소 영상을 되짚어 보다 ‘전국 지부 설치’ 부분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70여 년을 바라보는 상담소 역사에서 ‘지부’가 차지했던 의미를 다시 돌아보았고, 상담소 지부에서 전국업무협력기관으로 변화하는 지난한 과정도 되새겨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와 여전히 가부장제의 잔재 아래 고통받던 여성과 가정을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법률구조 사업을 시작한 상담소, 이러한 상담소의 역사를 바탕으로 가정법원의 설치와 국가 주도의 법률구조 공단 설립도 이루어졌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이념 아래 법률구조 사업을 시작한 상담소는 각 지역사회에서도 변민하는 이웃을

위한 법률구조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지부 설치 사업을 시작했고 이는 또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상담소는 법률구조공단 설립의 근거가 된 1987년 법률구조법의 제정을 끌어내면서 이 법에 의거 최초의 민간 법률구조법인 이 되었으나 민간단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각 지역사회의 지부들까지 끌어안을 여력을 갖추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본부와 지부 관계는 법과 제도에 의거한 합법적 요건을 충족하기에 문제가 있었고 상담소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오랜 시간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으나 결국은 조직, 예산 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도 상담소가 민간단체로서 법률구조 사업의 전국적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상담소의 지부 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왔으나 시일이 지나면서 2019년 더 이상 현 상태의 본부와 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아픈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오랜 고민과 논의 끝에 상담소는 본부와 지부 관계를 떠나 상담소와 전국업무협력기관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 각 지역사회의 법률구조 사업이 잠시라도 위축되어 도움이 절실한 가정과 가족 구성원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할까 염려가 컸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담소가 할 일은 하루라도 빨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합법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담소는 물론 상담소 지부라는 이름으로 길게는 40년 가까이 지역사회에서 법률구조 사업을 펼쳐왔던 지부들이 각자 속한 지역에서 겪어야 했던 깊은 상실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렇듯 적지 않은 진통을 겪으며 지부들의 전국업무협력기관 전환을 순차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등의 여파로 업무협력기관과의 대면 만남이 어려운 시절을 또 지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7일 드디어 상담소에서 17개 기관으로 이루어진 전국업무협력기관 워크숍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법률구조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소송구조 업무 협력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안내하는 시간을 비롯해 무엇보다 지부에서 전국업무협력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기관들이 각자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 영역을 넓히면서 법률구조의 기반을 닦고 있다는 각 기관의 소개와 인사는 그간의 아쉬움과 염려를 모두 털어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70여 년을 바라보는 상담소 역사에서 또 새로운 길을 나서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전국업무협력기관은 상담소 지부로서 쌓아온 역사와 자부심을 기반으로 각 지역사회에서 가정과 가족구성원을 위한 법률구조 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것입니다. 또한 상담소는 전국업무협력기관과 발맞춰 가정과 가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리고 모든 가족구성원의 복리를 위해, 우리 사회 법률구조 사업의 진일보를 향해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상담소 홍보 영화에 기록된 상담소 전국 지부의 역사가 전국업무협력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법률구조 사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전국업무협력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년도 소송구조 분석

양육비

-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 중 이행명령신청이 가장 많아
-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로 송달을 피하는 경우 감치 결정 어려워
- 과거 양육비는 대부분 청구 금액의 20~30% 이하로 인정
-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중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자 변경 등 반소로 고통받아
- 부동산·동산 압류 및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강한 심리적 부담을 주어 이행을 강제하기도

부모는 미성년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 역시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부양의무자는 본인의 생활수준을 낮추어서라도 자녀의 생활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부관계의 효력은 사라지더라도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파생되는 자녀에 대한 의무는 현존하므로 부모의 의무는 자녀와 같이 살지 않을 때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처럼 자녀가 부모 중 일방과 사는 경우, 자녀와 함께 살면서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는 보호와 교양을 통하여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진다. 반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부 또는 모로서의 양육 의무를 이행한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받은 적이 없거나, 과거에는 받았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하는 경우)이 80.7%에 달하였다. 한부모가족 내의 미성년자녀의 경우,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미성년자녀의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양육 환경이 무너지고 건

강한 성장을 저해함으로써 미성년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미성년자녀가 받아야 할 교육 여건도 취약하게 되어 결국 미성년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처럼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재원으로 국가와 사회는 양육비가 잘 지급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운영에 힘써야 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양육비 이행확보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그리고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에서는 다양한 양육비이행확보제도를 두고 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제도(제63조의2)’를 규정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육비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제도(동법 제63조의3)’, ‘이행명령제도(동법 제64조)’ 등을 두고 있어 가정법원은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하거나,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1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동법 제67조)를 부과할 수 있고,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양육비지급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68조). 한편 양육비이행법에서는 ‘한시적 양육비긴급지원제도(제14조 제1항 및 제3항)’, ‘운전면허정지제도(제21조의3 제1항)’, ‘출국금지제도(제21조의4)’, ‘명단공개(제21조의5)’, ‘형사처벌(제27조 제2항 제2호)’ 등의 이행강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가사소송법」과 양육비이행법에서 다양한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80.7%에 달하는 현실은 여전히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생존과 복리는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한부모가족 내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비청구 및 이행 확보를 위한 소송구조를 진행해 왔다. 특히 2007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양육비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특화하였고, 2015년부터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서비스수탁기관으로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법률구조사업을 더욱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2022년에 본소에서 진행한 양육비 관련 소송구조사건 92건을 분석하였다.

I. 양육비 소송구조 대상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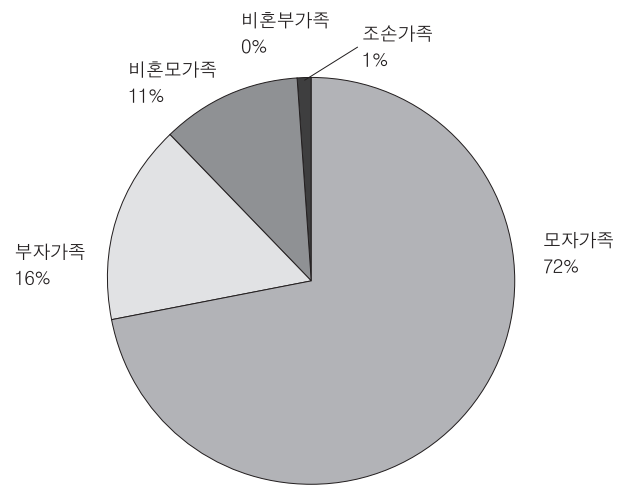
1. 가족형태

본소의 양육비 소송구조 대상은 대부분 한부모가족으로 모자가족, 부자가족, 비혼모가족, 비혼부가족, 조손가족 등을 포괄한다. 2022년의 경우 모자가족이 72%로 가장 많았고, 부자가족 16%, 비혼모가족이 11%를 차지했다. 조손가족의 사건도 1건 있었다.

〈표 1〉 가족 형태별 소송구조 건수

(단위 : 건, %)

구분	사건 수	비율
모자가족	66	72
부자가족	15	16
비혼모가족	10	11
비혼부가족	-	-
조손가족	1	1
합계	92	100



[그림 1] 가족 형태별 소송구조 건수

2. 연령 및 지역

1) 신청인 및 상대방 특성

소송구조를 신청한 신청인을 성별기준으로 분류하면 여성이 77명(84%), 남성이 15명(16%)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신청인 50%, 상대방 42%)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신청인의 경우는 30대(22%), 50대(18%), 20대(8%) 순이었고, 상대방의 경우는 50대(29%), 30대(17%), 20대(9%)의 순이었다. 상대방의 연령이 미상인 경우도 있었는데, 이 사안은 비혼모의 인지 및 양육비 등의 청구 사건으로 생부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통신사에 사실조회확인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던 전화번호가 타인 소유로 나타난 경우였다.

〈표 2〉 신청인 및 상대방 연령

(단위 : 건, %)

구분	신청인		상대방	
	사건 수	비율	사건 수	비율
20대	7	8	8	9
30대	20	22	15	17
40대	46	50	39	42
50대	17	18	27	29
60대	2	2	2	2
미상	-	-	1	1
합계	92	100	92	100

2) 지역

본소는 양육비 관련 사건의 소송구조를 전국적으로 지원한다. 2022년 본소가 지원한 소송구조 사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32건, 서울 28건, 경상 20건, 충청 8건, 강원 3건, 전라 1건 등의 순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65%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3〉 지역별 소송구조 건수

(단위 : 건, %)

구분	사건 수	비율
서울	28	30
경기	32	35
강원	3	3
충청	8	9
경상	20	22
전라	1	1
제주	-	-
합계	92	100

II. 소송구조 유형 및 결과

양육비 소송구조는 양육비의 액수를 결정하는 양육비 청구 사건과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이행을

을 확보하고자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으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다.

2022년 양육비 청구 사건은 33건,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은 59건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92건 중 71건의 사건이 종결되었고(양육비 청구 24건, 양육비 이행확보 47건) 21건은 진행 중이다. 종결된 사건의 결과를 살펴보면 승소·조정·결정 61건, 취하 8건, 기각 2건 등으로 나타났다.

본소의 양육비 소송구조는 본안 소송의 지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절차인 본안 외 소송을 차례로 지원함으로써 소송의 실효성과 양육비 지급의 이행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양육비 판결 이후 이행확보를 위한 소송구조절차를 수 년 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지속해서 지원받는 경우도 다수 있다. 양육비지급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매월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실제로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미지급이 지속되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한해에도 수 차례의 양육비 이행강제를 위한 소송구조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물가상승 및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 판결 또는 협의이혼 시 작성된 양육비 부담조서 상의 양육비의 증액이 필요한 때도 있으며, 양육비 이행강제를 위한 절차 진행 중에 상대방이 양육자 변경 또는 양육비 감액청구를 할 때는 이에 대한 응소를 지원하는 소송구조도 필요하다.

〈표 4〉 소송구조 사건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확보		합계	
		사건 수	비율	사건 수	비율	사건 수	비율
종결	승소·조정·결정	22	67	39	67	61	66
	기각	-	-	2	3	2	2
	각하	-	-	-	-	-	-
	이송	-	-	-	-	-	-
	취하	2 ¹⁾	6	6	10	8	9
진행 중		9	27	12	20	21	23
합계		33	100	59	100	92	100

1) 소 취하 사례(2건) 〈사례 1〉 원고인 비혼모(40대)가 생부(40대)를 상대로 인지,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를 하였으나, 생부가 소송을 취하해야 임의인지를 해준다고 하였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생부가 약속을 불이행 할 것에 대비하여 인지 신고 후에 소를 취하하여도 된다고 설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소 취하를 강력히 원하여 소 취하가 되었다.

〈사례 2〉 청구인(여, 40대)과 상대방(남, 50대)은 2001년 협의이혼을 하였고,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협의이혼을 한 2001년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의 양육비 총 180,150,000원(월 90만 원씩)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각자 자녀 1명씩을 양육하기로 하고, 서로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을 것을 구두 상 합의하였다는 점과 협의이혼 이후 소득이 거의 없었다는 사정으로 양육비 청구를 기각해 줄 것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재판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 등을 부담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청구를 취하하였다.

1. 양육비 청구 사건

1) 개요

양육비 청구 사건은 2022년 양육비 등 소송구조 사건 92건 중 33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2021년 100건 중 40건(40%)이었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나, 2020년 151건 중 28건(18.5%)이었던 점과 비교하였을 때는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양육비 등 청구 사건에는 비혼모가 인지와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자녀의 성본 계속 사용(또는 변경)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아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혼 시 양육비를 정하였으나 이후 물가상승과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교육비 등의 증가로 양육비의 증액을 원하는 경우, 양육자가 양육비 청구를 하자 비양육자가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에 대해 응소하는 경우, 비양육자가 제기한 양육비 감액 청구에 대한 응소 및 양육비 채권에 대한 시효 중단을 위한 경우, 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가족/혼인 형태별

2022년에 진행된 33건의 양육비 청구 사건을 가족 형태별로 보면, 모자가족 20건, 부자가족 2건, 비혼모 가족 10건, 조손가족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혼인/이혼 형태를 보면 협의이혼을 한 경우가 12건(37%),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와 비혼 상태였던 경우가 각 10건(각 30%), 사별 1건 등이었다.

양육비 청구 사건은 장래·과거 양육비 청구와 양육비 증액 신청 등이 대부분이지만, 양육비 청구와 함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친이 친권자인 경우에 친권자변경을 신청하거나, 자녀의 성과 본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의 성과 본에서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비혼모의 경우 인지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 성과 본 계속 사용 신청 등이 수반되기도 하였다. 또한 양육비청구 또는 이행강제신청 중 상대방이 양육비 감액이나 양육자 변경, 혹은 청구이의 등을 제기한 경우 이에 대한 응소도 포함되었다.

〈표 5〉 가족 형태별 본안 소송 건수

(단위 : 건)

구분	모자 가족	부자 가족	비혼모 가족	비혼부 가족	조손 가족	합계
인지 및 양육비청구	1 ²⁾	-	7	-	-	8
양육비 청구	17	1	2	-	1	21
기타	2	1	1 ³⁾	-	-	4
합계	20	2	10	-	1	33

〈표 6〉 혼인/이혼 형태별 소송 건수

(단위 : 건, %)

혼인/이혼 형태	비혼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사별	합계
사건 수	10	12	10	1	33
비율	30	37	30	3	100

〈 사례 1 〉 미성년후견인(외조모)의 비양육친(부)에 대한 양육비 청구

청구인(여, 50대)의 딸(여, 30대)은 2011년 상대방(남, 40대)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11세, 지적장애 3급)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으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친권상실이 되었고 청구인이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다. 상대방은 2011년 이혼 후 자녀와 왕래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은 장애가 있는 손자를 힘겹게 양육하였다. 이에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6,400만 원과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80만 원씩의 양육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과거 양육비 1,500만 원과 매월 60만 원씩의 양육비 지급을 결정하였다.

〈 사례 2 〉 양육비 채권에 기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응소

채권자(여, 50대)와 채무자(남, 50대)는 2010년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는데,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양육비가 4,8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42,831,150원을 지급하였고, 성년이 된 후에도 36,861,360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미지급 양육비가 없음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3,5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권자는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신청을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2) 이 사례는 법률상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혼인외자를 출산한 생모가 자녀의 친부로 추정받는 (前)법률상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으나, 생부가 자녀를 친자로 인지하기 전에 사망함에 따라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한 경우였다.

3) 부(20대)가 자녀(3세)를 인정한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혼모(20대)가 생부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 자녀의 성을 모의 성으로 변경할 것을 청구하였다.

〈 사례 3 〉 양육비 이행명령에 대한 양육비 감액청구에 대한 응소

피신청인 채무자(남, 40대)는 2015년 협의이혼 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200만 원을 신청인(여, 30대)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양육비로 4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과거 양육비 1억 5천만 원이 미지급되었다. 이에 법원은 미지급 양육비 중 1억 원을 10개월간 1,000만 원씩 지급하라는 이행명령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장래 양육비로 매달 30만 원씩, 과거양육비로는 2,000만 원만을 지급하되 지급방법으로는 월 30만 원씩 분할 지급할 것을 양육비변경심판청구로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조정이 성립한 달부터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 양육비로 신청인에게 월 7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3) 양육비 청구 형태 및 인정 금액

양육비 청구사건 중 취하된 사건(2건)을 제외하고 종결되거나 진행 중인 사건은 31건으로 자녀의 장래양육비만을 청구한 경우 12건,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함께 청구한 경우 7건, 과거 양육비만을 청구한 경우 5건 등이 있었다.

〈표 7〉 양육비 청구 형태

(단위 : 건)

구분	종결	진행 중	합계
장래양육비 청구	8	4	12
과거+장래양육비 청구	3	4	7
과거양육비 청구	5	-	5
기타 ⁴⁾	6	1	7
합계	22	9	31

〈 사례 4 〉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 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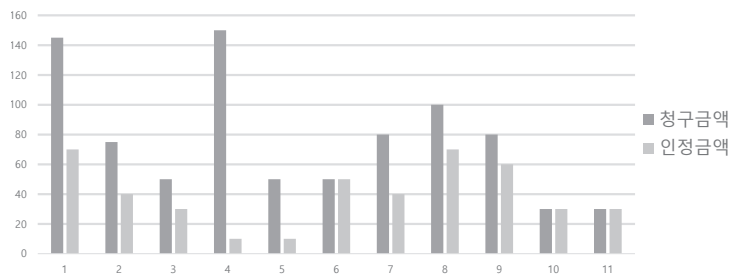
비혼 상태에서 원고(여, 20대)는 피고(남, 나이 미상)를 만나 임신을 하였고, 상대방의 일방적 낙태 요구와 연락 두절 이후 미혼모시설에서 자녀를 출산하였다. 이후 잠시 상대방과 연락이 되었으나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고, 자녀의 양육비 청구를 위해

상대방에게 인지, 양육자 및 친권자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소송 중 원고가 알고 있던 피고의 핸드폰 번호는 피고의 것이 아니란 사실이 밝혀졌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여 소송의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소 취하를 고려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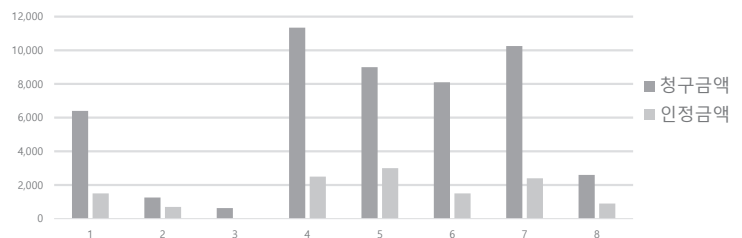
〈 사례 5 〉 6년 동안 양육비를 미지급한 친권자 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친권자 변경청구

청구인(여, 40대)은 상대방(남, 50대)과 2016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80만 원씩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6년 동안 양육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이행명령신청과 함께 친권자 변경심판 청구를 함께 하였다.

다음으로 양육비 청구사건 중 승소 혹은 조정으로 종결된 16건의 양육비 청구금액과 판결(조정) 금액을 살펴보면, 장래양육비에 대한 청구(11건) 중 73%(8건)가 청구금액의 50% 이상인 경우였다. 한편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8건)의 경우 1건(12%)이 청구금액의 56%가 인정되었고 7건(88%)은 청구금액의 20~30% 정도이거나 과거양육비가 전혀 인정되지 않은 경우였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자녀들의 평균 연령은 25세였다.



[그림 2] 장래 양육비 청구 및 인정금액



[그림 3] 과거 양육비 청구 및 인정금액

4) 기타 사건으로는 친권자이면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미지급양육비에 대한 이행강제와 별도로 친권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성에서 모의 성으로 자녀의 성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하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감액청구 또는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는 경우의 응소, 양육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였다며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를 다룰 때 대한 응소 등 양육비 청구와 연관된 다양한 소송구조를 진행하였다.

〈표 8〉 양육비 청구 및 인정 금액

(단위 : 만 원, %)

구분	장래양육비			과거양육비		
	청구금액	인정금액	인정비율	청구금액	인정금액	인정비율
장래양육비 청구 (8건)	145	70	48	-		
	75	40	53	-		
	50	30	60	-		
	150	10	7	-		
	50	10	20	-		
	50	50	100	-		
	80	40	50	-		
	100	70	70	-		
과거+장래양육비 청구 (3건)	80	60	75	6,400	1,500	23
	30	30	100	1,260	700	56
	30	30	100	630	0	0
과거양육비 청구 (5건)	-			11,340	2,500	22
	-			9,000	3,000	33
	-			8,100	1,500	19
	-			10,250	2,400	24
	-			2,600	900	35

〈 사례 6 〉 이혼 후 11년간 쌍둥이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3,000만 원

청구인(여, 40대)과 상대방(남, 50대)은 2002년 협의이혼 후 2005년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2006년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혼 후 약 2년간 공동양육을 하다가 2008년부터는 청구인 혼자서 자녀들(쌍둥이, 22세)을 양육해왔다. 청구인은 2008년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의 양육비 추산액 105,600,000원(월 40만 원×11년×2명) 중 9,000만 원을 과거 양육비로 청구하였다. 이에 상대방이 과거양육비로 3,000만 원을 청구인에게 4회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은 별거가 시작된 2004년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일까지인 2018년 6월까지의 과거양육비 8,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4년 재판상 이혼 중 양육비 판결이 있었으므로, 2004년 12월부터 2014년 재판상 이혼 전까지의 기간의 양육비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난한 점, 양육비 지출이나 소득 자료도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금액 8,100만 원 중 1,500만 원만 인정하였다.

〈 사례 7 〉 이혼 후 16년간의 과거 양육비 2,500만 원 인정

청구인(여, 50대)과 상대방(남, 50대)은 2003년 협의이혼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2003. 7.부터 2019. 3.까지)의 과거 양육비로 113,4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상대방이 2,500만 원을 과거양육비로 지급하되, 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으로 분할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례 8 〉 이혼 전부터 별거하며 14년간 자녀를 혼자서 양육한 경우 과거 양육비

청구인(여, 50대)은 2004년부터 자녀를 혼자서 양육해왔으며, 상대방(남, 50대)과는 2014년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청구인이 이혼 후 양육비와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동안 상대방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

〈 사례 9 〉 양육비 채권자의 8년간 미지급된 양육비 채권과 양육비 채무자의 위자료 채권이 있는 경우 과거 양육비

청구인(남, 50대)은 상대방(여, 30대)과 2014년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정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양육비에 관한 판결은 없었다. 이혼 후 상대방은 자녀(11세)와 면접교섭을 하며 지냈으나, 청구인이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자 전화번호를 바꾼 뒤 연락을 끊었다. 이에 청구인은 과거 양육비(2,490만 원)와 장래 양육비(매월 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양육자 변경 및 유아인도청구를 하였다. 이에 1심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거양육비 1,860만 원(2014. 11.부터 2022. 7.까지)과 장래양육비로 매월 40만 원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1심에 대해 상대방은 항고하였고, 이에 2심에서는 청구인은 과거 양육비 채권을 포기하고, 상대방도 청구인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포기하되, 2022. 8.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일까지 매월 4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4) 소송 기간

승소·조정 등으로 종결된 양육비 청구 사건 22건⁵⁾의 소송 기간은 1개월~3개월 9건, 3개월~6개월 9건, 6개월~9개월은 3건, 9개월~1년은 1건으로 나타났다.

2.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

1) 개요

양육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을 촉구하거나 강제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은 2022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92건 중 59건(64%)이었다.

가족 형태별로 보면 모자가족의 신청이 46건(78%)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자가족이 13건(22%)이었다. 모자가정이 부자가정보다 3배 정도가 많았다.

〈표 9〉 가족 형태별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 건수
(단위 : 건, %)

구분	모자 가족	부자 가족	비혼모 가족	비혼부 가족	조손 가족	계
사건 수	46	13	-	-	-	59
비율	78	22	-	-	-	100

2) 미지급 양육비 액수

소송구조 신청 당시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의 액수를 살펴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23건(39%)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11건(18%),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10건(17%),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건(17%),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4건(7%), 1억 원 이상 1건(2%)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지급 양육비가 1,000만 원 이상이 되었을 때 소송 구조를 신청하는 경우가 38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였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재원이기에 매달 30~50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도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미지급액이 크다는 것은 많은 미성년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한 성장과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을 시사한다.

〈표 10〉 미지급 양육비 액수

(단위 : 건, %)

구분	사건 수	비율
300만 원 미만	-	-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10	17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11	18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23	39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4	7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	17
1억 원 이상	1	2
합계	59	100

3) 이행확보 유형별 사건 내용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 중 이행명령신청이 26건(4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급여 또는 예금, 임차보증금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13건, 22%), 감치신청(10건, 17%), 재산명시신청(3건, 5%),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2건,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2건, 3%), 재산조회, 유체동산강제경매신청, 부동산강제경매신청(각 1건, 2%) 등 이었다.

〈표 11〉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별 건수

(단위 : 건, %)

구분	전체	비율	종결	진행 중
이행명령	26	44	17	9
감치	10	17	7	3
채권압류 및 추심	13	22	13	-
부동산 강제경매	1	2	1	-
유체동산 강제경매	1	2	1	-
재산조회	1	2	1	-
재산명시	3	5	3	-
직접지급명령	2	3	2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2	3	2	-
합계	59	100	47	12

(1)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가) 사건 현황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양육비 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5) 취하2건 제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이행명령이라고 한다. 또한,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게 되면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권리자는 30일의 범위에서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022년의 경우 과태료 신청 사건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행명령은 26건, 감치 10건이 신청되었고, 이중 이행명령 17건,⁶⁾ 감치 7건이 종결되었다.

〈 사례 10 〉 이행명령 신청이 기각된 경우

피신청인(남, 40대)은 신청인(여, 40대)과 2018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7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 신청인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던 중 2018. 4.부터 2019. 8.까지 신청인의 동의하에 피신청인이 자녀를 양육하였고, 그 동안 양육비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청인은 이혼 후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미지급된 양육비 1,980만 원에 대한 이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 양육비를 받지 않았던 점, 피신청인이 신용회복절차 중에 있는 점, 그리고 피신청인이 또 다른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고에 따라 양육비 70만 원 및 미지급 양육비 중 15만 원씩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결과 및 소송기간

종결된 사건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행명령 신청은 26건 중 17건이 종결되었다. 그 중 12건이 이행명령결정을 받았다. 이행명령 신청 취하도 4건 있었는데 그중 2건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비양육자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경우였다. 감치 신청은 10건 중 7건이 종결되었으며 그 중 1건의 취하를 제외하고 모두 감치 결정을 받았다. 감치결정이 인용된 사례들을 보면 감치기간이 미지급 양육비의 액수에 비례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청에서 결정까지의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이행명령

은 1개월-3개월 5건, 3개월-6개월 6건, 6개월-9개월 2건이었고, 감치는 1개월-3개월 2건, 3개월-6개월 5건 등으로 통상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감치 종결 내용 및 미지급 양육비

(단위 : 원)

구분	종결 내용	미지급 양육비(금액)
종결된 감치사건 내용 (7건)	불처벌 결정	20,000,000
	감치 20일 결정	3,000,000
	감치 10일 결정	5,000,000
	감치 7일 결정	10,020,000
	감치 30일 결정	3,000,000
	감치 7일 결정 (향고 기각)	24,000,000
	취하	8,000,000

〈 사례 11 〉 2년 동안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한 적 없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감치 신청이 불처벌 결정 된 경우

신청인(여, 40대)과 피신청인(남, 40대)은 2020년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하였다. 조정조서에 따라 피신청인은 2020. 11.부터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었으나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통해 2021. 10.까지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2,000만 원에 대한 이행명령결정을 받았으나 양육비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30일의 감치신청을 하였으나 불감치 결정이 되었다. 불감치 결정 사유로 법원은 이행명령과 감치신청 사건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으로 비록 피신청인이 핸드폰번호를 허위로 알려주고,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 등 악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하는 사안이지만, 이행명령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의 경우에는 아무리 악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처벌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2) 강제집행 등

(가) 직접지급명령 현황 및 결과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

6) 종결된 이행명령신청(17건) 중 결정 12건, 기각 1건, 취하 4건으로 나타났다.

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직접지급명령이라고 한다. 2022년 직접지급명령은 2건 신청되었고, 2건 모두 인용결정 되었다.

〈사례 12〉 16개월 동안 양육비를 미지급한 피신청인에 대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결정

신청인(여, 30대)은 피신청인(남, 30대)의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으로 인해 2021년 재판 이혼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매월 5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하나 두 달만 양육비 지급을 하고 16개월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하였다(미지급 양육비 800만 원).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신청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피신청인의 소득세원천징수 의무자에게 피신청인에게 지급하는 정기적 급여채무 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현황 및 결과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강제집행 중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 보증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 2022년 신청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은 총 13건이었으며 모두 인용되었다. 한편 채무자의 유체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경매와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의 경우 각 1건이 신청되어 모두 인용결정을 받았다.

〈사례 13〉 가재도구 등의 동산압류를 통해 1,270만 원 (약 26개월 분)의 미지급 양육비 중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

양육비 채권자(여, 40대)와 양육비 채무자(남, 40대)는 2010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매월 5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모두 5,8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1,2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재도구에 동산압류신청을 하였다. 압류의 대상이 된 유체동산의 최저일괄 매각가격은 252만 원으로, 매각대금 중에서 양육비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배당요구가 있으면 경락대금의 1/2에 해당하는 126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중 200만 원을 지급받고 동산압류신청을 취소하였다.

(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현황 및 결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있다. 재산명시는 양육비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절차에서 송달에 어려움이 있어 양육비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법원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이다. 2022년 소송구조 사건 중 재산명시 3건, 재산조회 1건이 신청되어 모두 인용결정을 받았다.

〈사례 14〉 재산명시를 통해 46개월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보유 현황을 확인한 경우

청구인(여, 40대)은 상대방(남, 40대)과 경제적 문제로 인한 다툼 끝에 별거를 지속하다가 2009년 재판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일까지 매월 5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6년 4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22,825,300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양육비는 2,280만 원이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현금(적금, 1억 5천만 원)과 부동산(전,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양육비의 이행강제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다.

(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현황 및 결과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 역시 소송구조 사건으로 지원되고 있다. 2022년 소송구조 사건 중 2건이 신청되어 인용결정을 받았다.

**〈사례15〉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불명과 재산파악의
어려움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한 경우**

채권자(남, 30대)는 채무자(여, 30대)의 외도로 2018. 4. 9.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하며 채무자는 매월 말 두 자녀가 성년이 되는 전 날까지 1인당 양육비 각 50만 원씩을 시작으로 매년 1월 5%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에 더해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자가 양육비를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을 시 두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까지 선계산한 양육비 일시금 2억 원(미지급시 법정이자 15% 적용)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혼 후 단 1회도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 4,400만 원의 양육비가 미지급되었다. 2021년에는 미지급 양육비 중 3,200만 원(2018. 8~2021. 3.)에 대한 이행명령결정도 받았으나 여전히 채무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연락이 두절되고, 채무자 소유의 재산파악도 어려워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III. 소결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재원이거나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가운데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녀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일 뿐만 아니라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양육 환경마저 보장이 되지 않아 건강한 성장이 저해되고 교육 여건도 취약하게 되며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의 마련과 운영은 미성년자녀 복리를 위한 국가의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본소의 2022년 양육비청구 또는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소송구조 신청 사건들을 보면 미지급 양육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65%에 달하고 있고, 매달 30-50만 원 정도의 소액초차 수년간 미지급된 것으로 추정되어 양육비 이행확보제도 마련이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소 양육비 소송구조 사례에서 보면, 이미 양육비 관련 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거나 강제집행 중에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는 경우, 재판 중에 고의로 연락을 끊

고 행방불명되는 경우 혹은 양육비 감액청구를 하는 경우 등의 양육비 이행강제를 방해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와 같이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 중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면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미지급에 의한 금전적 어려움 이외의 다양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한편 양육비 압류·추심을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태 파악이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재산조회제도의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야만 신청이 가능한 점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존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수단 중 가장 강력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감치명령’의 경우도 이행명령 이후의 양육비 미지급이 3회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앞에서 본 사례처럼 양육비 채무자가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채무자의 잠적, 위장전입 등으로 인해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송달이 안 되는 경우 등)에는 현행법상 공시송달로는 감치결정이 나지 않기에 악의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무시하며 회피하는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하기는 매우 어렵다.

더욱이 2021년 새롭게 도입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도, 출국금지 요청 제도, 명단공개, 형사 처벌 등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들의 경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를 적용 조건으로 삼고 있어 실무상 적극적인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양육비 청구에서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강제를 위한 절차에는 이미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에도 양육비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행명령을 거치지 않고도 감치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공시송달의 경우에도 감치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사례에서 보면, 양육비 이행강제 중 부동산압류 및 경매, 동산 압류 등의 신청이 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가 심리적 부담감에 양육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동산압류신청의 경우 실제 경매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일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서 매월 소액의 양육비 미지급을 사유로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고 미지급 양육비가 누적되어 큰 금액이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양육비가 미지급되고 있는 동안에도 미성년 자녀는 성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존재한다.

동산 압류의 경우에도 가재도구와 같은 동산 압류 집행 시 일반 가정의 경우 통상 150~300만 원 사이의 감정가액이 나오기에 양육비 미지급액을 충당하기에는 소액에 불과하다.⁷⁾ 이러한 점에서 부동산이나 동산 압류는 비록 채무자에게는 심리적 강제가 클지라도, 실제 채권자들이 이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어 양육비 이행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소송구조사례를 보면, 과거 양육비 청구의 경우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전체 기간의 양육비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 보다는 청구금액 중 20~30%만 과거 양육비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의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로 양육비지급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나 지급되지 않았고, 오랜 기간 양육비 채권자가 자녀를 혼자서 양육해오다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이미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과거 양육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양육비는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지급되어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므로 공백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운용이 필요하다.

본소의 소송구조 사례들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해본다.

첫째,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회기 이상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양육비 채무자의 고의적인 재산 처분 및 은닉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당사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관련 정보를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⁸⁾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2년째 표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본인 동의 없는 신용정보 등의 제공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고 양육비를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그러한 채무자의 무책임함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협받고 있는 아동의 생존권을 비교형량하였을 때 아동의 생존권이 우선시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위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개정을 촉구한다.

둘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사건 중 이행명령신청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의 경우에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민법은 제168조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청구(제1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제2호), 승인(제3호)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6. 4. 22.자 2016오2 결정에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은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라고 하면서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본다면 이행명령을 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소멸시효제도의 대전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이 명백하다. 특히 상담현장의 실무례를 볼 때,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양육비 채

7)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하면 1차적으로 법원 직원들이 방문하여 채무자 또는 가족 등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진행하지만, 아무도 없는 경우(폐문)에는 압류 진행을 하지 않고 2차 일정을 정하게 되고 2차 진행시에도 아무도 없을 경우에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다(강제 개문). 이때에도 입회인(증인) 2명이 있어야 하고,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경우 시진 장치의 회복도 해야 하므로 이러한 열쇠수리공의 인건비, 증인의 여비 등의 추가적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경매과정에서 채무자의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유체동산을 최고가 매수신고를 한 매수자와 같은 금액으로 우선매수 할 수 있고, 유체동산이 부부공동의 재산이므로 채무자의 배우자는 해당 유체동산의 지분을 1/2가지고 있어 그 매각대금의 1/2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동산강제집행을 통해서 양육비 채권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액수는 매우 적다. 실제로 <사례 13>에서 가재도구 등의 동산압류를 통해 1,270만 원(약 26개월 분)의 미지급 양육비 중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압류 신청비용에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도 5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다.

8) 2021. 6. 9. 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26),

권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찾을 수 없어 이행명령 신청만이 양육비 확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행명령신청의 소멸시효 중단효력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양육비 채권자의 권리보호가 좀 더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고의로 소재지 불명을 이용하는 채무자에 대한 감치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위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은 양육비 청구 및 이행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규정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즉,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하는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 및 집행 절차에서 양육비 청구·이행 및 집행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 당시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다.⁹⁾ 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송달을 회피하는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 이행확보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양육비 이행법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 처벌 등 제재조치의 선결 요건으로 감치 결정을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제재조치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신속한 감치결정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강제집행과 배당의 경우 양육비 채권에 우선변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양육비 이행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안한다. 우리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을 약정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¹⁰⁾ 동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제3조의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¹¹⁾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상가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으로,¹²⁾ 동법 제14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¹³⁾ 또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¹⁴⁾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다.¹⁵⁾ 요컨대 위의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양육비 이행확보는 미성년자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결국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이 필요한 채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양육비 채권 역시 위의 채권들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입법적 고려를 촉구한다.

조은경 상담위원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9) 위 개정법률안 제21조의6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1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참고

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가단111096 참고

14) 근로기준법 제1조

15)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참고

등록동반자관계는 혼인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김 상 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는 말

1980년대 후반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전통적인 혼인 제도 이외에 두 사람 사이의 법적인 결합을 인정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혼인과 구별하여 보통 등록동반자관계라고 명명되었던 이 제도는 처음에는 주로 동성혼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동성 2인 사이에서만 허용되었고 이성간에 대해서는 개방되지 않았다(예를 들어 1989년에 세계 최초로 등록동반자관계를 도입한 덴마크는 동성간에 한하여 등록동반자관계의 성립을 허용하였다). 이성간의 법적 결합으로는 이미 혼인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새로운 제도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초기의 등록동반자관계는 동성혼의 대안이라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각국의 입법자는 이에 대해서 가능하면 혼인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려고 하였다. 그 후 각국에서 본격적으로 동성혼이 입법되기 시작하자 동성간의 준혼이라는 성격을 지닌 동성간의 등록동반자관계는 더 이상 존속할 근거를 잃게 되었다. 초기에 동성간의 등록동반자관계를 도입했던 나라에서 동성혼의 입법과 더불어 더 이상 등록동반자관계의 성립을 허용하지 않게 된 데에는 이러한 배

경이 자리잡고 있다(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는 2012년에 동성혼이 도입되면서 더 이상의 등록동반자관계는 성립할 수 없게 되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도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였다).

한편 1990년대 후반에 프랑스와 벨기에,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들은 전통적인 혼인제도 이외에 두 사람간의 새로운 법적 결합을 모색하면서 동성간과 이성간의 결합을 아우르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동성간은 물론 이성간의 결합을 허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나라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혼인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한 ‘무거운 결합’을 선택한 입법례가 있는가 하면(네덜란드의 등록동반자제도), 혼인과 비교하여 성립과 효력, 해소에 있어서 ‘가벼운 결합’을 선택한 입법례도 있었다(프랑스의 PACS, 벨기에의 법정동거). 이러한 제도는 처음부터 단지 동성혼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성격만을 갖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해당 국가에 동성혼이 도입된 후에도 그와 관계없이 별개의 제도로써 존속할 수 있었다. 최근의 통계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읽을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혼인보다 ‘가벼운 결합’을 선택한 나라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 이 원고는 지난 2022년 6월에 있었던 상담소 가족법개정위원회에서 발표하고 그해 8월 〈가정상담〉에 수정 보완하여 실었던 원고에 주제와 관련한 세계적 현황과 통계 부분 등을 더 보완하여 2023년 3월 가족법개정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상담소는 이 내용과 ‘고령인 지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의사결정지원’ 등 가족법개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추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여 가족법개정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그 사회에서 전통적인 혼인제도와 비교하여 보다 가벼운 결합을 원하는 대중적 정서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동성 및 이성간의 결합을 아우르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모색해 본다.

II. 프랑스

1. PACS¹⁾의 도입과 현황

(1) 프랑스의 PACS는 「PACS에 관한 1999년 11월 15일 법」²⁾을 통해 제정되고 다음 날인 11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프랑스에서 PACS가 제정된 이유는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³⁾ 외부적 요인으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일련의 유럽국가들(1989년 덴마크, 1993년 노르웨이, 1994년 스웨덴, 1996년 아이슬란드)에서 동성간의 결합에 혼인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진 것을 들 수 있으며, 내부적 요인으로는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벌어졌던 혼인율의 감소와 자유로운 동거의 증가를 들 수 있다.⁴⁾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는 복잡한 이혼절차, 이혼의 효과로 인한 재산분할 등에 부담을 느낀 젊은 세대가 혼인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프랑스 정부는 혼인에 비하여 부담이 적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동성간의 결합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이 겹치면서 프랑스 정부는 동성간의 결합과 이성간의 결합을 아우르는 PACS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 PACS가 도입된 1999년 이후 혼인과 PACS의 성립 추이를 비교해 보면, PACS의 성립수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⁵⁾ 혼인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ACS 시행 초기에는 PACS의 성립수가 전체 혼인수의 약 10% 정도였으나(2002년 혼인수 286,169, PACS 성립수 25,305), 2019년에는 약 90%에 이르고 있다(2019년 혼인수 224,740, PACS 성립수 196,370. 2020년에는 오히려 PACS 성립수가 혼인수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2020년 혼인수 154,581, PACS 성립수 196,370).⁶⁾

2013년에 프랑스에서 동성혼이 허용되었지만, 이와 관계 없이 PACS의 성립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성간의 결합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2000년에는 동성간의 PACS 성립비율이 전체의 24%였으나, 2020년에는 5%에 미치지 못하였다). PACS가 도입될 당시에는 동성혼에 대한 대안이라는 성격이 강했으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전통적인 혼인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PACS 도입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프랑스에서의 혼인 및 PACS의 변화추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 참조.

2. 성립

(1) PACS는 공동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동성 또는 이성인 2인의 성년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contrat)이다(프랑스민법 제515-1조). PACS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i)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성년자이어야 한다(프랑스민법 제515-1조),⁷⁾ ii) 직계혈족(직계인척) 및 3촌 이내의 방계혈족간이 아니어야 한다(프랑스민법 제515-2조 제1호), iii) 이미 혼인한 상태에 있거나(프랑스민법 제515-2조 제2호)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PACS가 성립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프랑스민법 제515-2조 제3호).

1)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는 일반적으로 연대의무협약으로 번역된다. 안문희,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연대의무협약에 대한 연구: PACS 제정 후 십여 년이 지난 지금은?”, 법과사회 제42호 (2012), 201-204면 참조.

2) Loi n° 99-944 du 15 novembre 1999 relative au pacte civil de solidarité.

3) 안문희,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연대의무협약에 대한 연구: PACS 제정 후 십여 년이 지난 지금은?”, 『법과사회』 제42호 (2012), 203면.

4) Hugues FULCHIRON, Philippe MALAURIE, La famille, L.G.D.J., 2006, p. 177 et s; Patrick COURBE, Droit de la famille, Dalloz-Sirey, 2009, p. 261.

5) 특히 2005년, 2007년, 2008년에 큰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2005년과 2007년에 PACS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것이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NK-BGB/Junggeburch, Länderbericht(Frankreich), 2010, Rn. 179.

6) Mariages et Pacs, Données annuelles de 1990 à 2021, L'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INSEE);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2381498#tableau-figure1>.

7) 제한능력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PACS를 체결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461조, 제462조).

연도	혼인			pacs		
	이성	동성	합(건수)	이성	동성	합(건수)
1999			293,544	3,551	2,600	6,151
2000			305,234	16,859	5,412	22,271
2001			295,720	16,306	3,323	19,629
2002			286,169	21,683	3,622	25,305
2003			282,756	27,276	4,294	31,570
2004			278,439	35,057	5,023	40,080
2005			283,036	55,597	4,865	60,462
2010			251,654	196,405	9,145	205,550
2013	231,225	7,367	238,592	162,609	6,083	168,692
2014	230,770	10,522	241,292	167,469	6,262	173,731
2015	228,565	7,751	236,316	181,930	7,017	188,947
2016	225,612	7,113	232,725	184,425	7,112	191,537
2017	226,671	7,244	233,915	188,233	7,400	195,633
2018	228,349	6,386	234,735	200,282	8,589	208,871
2019	218,468	6,272	224,740	188,014	8,356	196,370
2020	149,983	4,598	154,581	165,911	7,983	173,894
2021	212,413	6,406	218,819	199,651	9,810	209,461
2022	237,000	7,000	244,000	182,000	10,000	192,000

(2) PACS를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신분등록공무원¹⁰⁾에
 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에 자신들이 작성한
 PACS에 관한 약정서¹¹⁾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분등록공무원
 은 접수한 신고를 등록한 후 신고에 대한 공고절차¹²⁾에 착수
 하게 된다(프랑스민법 제515-3조 제1항 및 제3항).

PACS 신고가 등록되면 당사자 각자의 출생증명서에
 PACS에 관한 약정, PACS의 성립 사실 및 상대방의 신분 사
 항이 기재된다(프랑스민법 제515-3-1조 제1항). PACS 성립
 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신분등록공무원이 신고를 접수
 하여 등록한 날부터 발생하며, 제3자에 대해서는 공고기간이
 완료된 때부터 발생한다(프랑스민법 제515-3-1조 제2항).

3. 효력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PACS 당사자 사이에는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발생한다
 (프랑스민법 제515-4조, 제515-3-1조).¹³⁾ PACS의 성립에
 의해서 인척관계는 발생하지 않으며, 성(姓)도 변경되지 않는
 다(PACS 당사자는 공통의 성을 사용할 수 없다).

PACS 당사자는 신고 시에 제출하는 약정서를 통해 생활
 비용의 액수와 분담에 대해서 정할 수 있다. PACS 체결 당
 시 당사자들이 재산관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재산제로서 별산제가 적용되므로,¹⁴⁾ PACS 성

8) Mariages et Pacs, Données annuelles de 1990 à 2021, L'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INSEE);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2381498#tableau-figure1>.

9) Mariages et Pacs, Données annuelles de 1990 à 2022, L'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INSEE), 2023. 1. 17.;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2381498#tableau-figure1>.

10) 프랑스민법에 의하면 PACS 신고는 공증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515-3조 제5항 및 제6항).

11) 약정서에는 생활비용의 분담, 재산관계 등의 내용이 기재될 수 있다.

12)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신분등록에는 제3자의 이의제기가 가능한 공고절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10일의 공고기간이 정해져 있으나(프랑스민법 제64조 제1항), 혼인신고를 제외한 신분등록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기간은 정하여져 있지 않다.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신분에 관한 신고절차가 완료된다(프랑스민법 제101-1조, 제101-2조).

13) 프랑스민법은 PACS 당사자 사이의 정조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들 사이의 정조의무를 인정하였다(TGI Lille, Ord. 5 juin 2002, Dalloz, 2003, p. 515).

14) PACS 시행 당시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PACS 성립 후에 취득한 재산은 양 당사자의 공유(지분은 균등)가 되었

립 전에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물론, PACS의 존속 중에 소득활동이나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소유가 된다(프랑스민법 제515-5조 제1항).¹⁵⁾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채무)에 대해서도 별산제가 적용되지만,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연대책임이 인정된다(프랑스민법 제515-4조).¹⁶⁾ 다만 PACS의 존속 중에 취득한 재산 중에서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예를 들어 가재도구 등)은 공유로 간주되어 PACS 당사자 각자에게 균등한 권리가 인정된다(프랑스민법 제515-5조 제2항).

(2) 자녀에 대한 효과

PACS 존속 중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혼인 중에 아내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적용되는 친생추정에 관한 규정(프랑스민법 제312조)이 PACS에는 준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PACS 당사자는 인지에 의하여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다.

PACS 당사자 2인이 자녀를 공동으로 입양하는 것은 원래 허용되지 않았으나, 최근의 입양법 개정¹⁷⁾을 통해 공동입양이 가능하게 되었다.

4. 해소

(1) 사망이나 혼인으로 인한 해소

PACS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거나 혼인(PACS의 상대방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PACS는 자동으로 해소된다(프랑스민법 제515-7조 제1항).

사망으로 해소되는 경우 PACS 당사자에게는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생존한 일방은 프랑스민법 제763조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사망한 일

방이 임차한 주택에서 1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가구 및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동산에 대한 용익권을 가진다(프랑스민법 제515-6조 제3항).

(2)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해소

PACS 당사자는 협의 또는 단독으로 PACS를 해소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515-7조 제3항). PACS의 해소에 합의한 당사자 2인은 PACS 신고지의 신분등록공무원에게 PACS의 해소에 관한 공동의 의사를 제출한다(프랑스민법 제515-7조 제4항).

PACS 당사자 일방이 PACS를 해소하려는 경우에는 해소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그 사본을 PACS 신고지의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프랑스민법 제515-7조 제5항).

PACS 해소의 의사를 전달받은 신분등록공무원¹⁸⁾은 해당 사실을 등록하고 공고절차에 착수한다(프랑스민법 제515-7조 제6항). PACS 해소의 효과는 그 사실이 등록된 날에 발생한다(프랑스민법 제515-7조 제7항).

(3) 해소의 효과

대부분의 PACS는 그 존속기간 동안 별산제의 적용을 받므로, 해소(생전 해소와 사망에 의한 해소를 포함한다) 시에도 별산제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재산관계에 대한 청산으로서 재산분할청구나 연금에 대한 권리의 청산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결정한다(프랑스민법 제515-7조 제10항).

으나, 2006년 6월 23일 개정(2007년 1월 1일 시행)에 의해서 별산제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PACS 시행 이후 가장 의미있는 개정으로 평가된다(NK-BGB/Junggeburt, Länderbericht(Frankreich), 2021, Rn. 224). 이로써 PACS에 있어서 개인주의는 더욱 부각되는 한편, 당사자간의 유대관계는 약화되었다고 생각된다.

15) PACS 신고 당시 제출한 약정서를 통해서 공유제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이런 경우에는 PACS 체결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두 사람이 각각 절반의 권리를 갖는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일정한 재산(예를 들어 상속재산, 수증재산 등)을 공유에서 제외한다는 합의는 유효하다. 신고 당시에는 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서 별산제의 적용을 받았더라도 PACS의 존속 중에 약정서의 변경을 통해서 공유제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프랑스민법 제515-5-1조).

16) 다만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도 PACS 당사자의 생활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17) 입양 개정에 관한 2022년 2월 22일 법. Loi n° 2022-219 du 21 février 2022 visant à réformer l'adoption.

18) PACS 신고를 공증인에게 했던 경우에는 담당 공증인을 통해서 PACS를 해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PACS를 일방적으로 해소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PACS의 일방적 해소 가능성은 PACS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⁹⁾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PACS의 일방적 해소가 1789년의 인권선언에 기인한 헌법의 기본 이념에 원칙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²⁰⁾

III. 벨기에

1. 법정동거의 도입과 현황

(1) 1996년 초부터 벨기에의 몇몇 도시 및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권한에 의해서 동성간 및 이성간의 동반자 관계를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부에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반자관계는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었고 단지 상징적인 의미밖에 갖지 못했으나, 벨기에 입법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²¹⁾ 그 결과 1998년 10월에 법정동거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998년 11월 23일 국왕의 승인을 받아 2000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²²⁾

법정동거라는 새로운 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가족 법상의 신분도 창설하지 않으며(예를 들어 일방 당사자와 상대방의 친족 사이에는 인척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지 당사자 간의 재산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실용적인 규정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런 이유로 법정동거에 관한 규정은 벨기에민법전 제1편(人)²³⁾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유권취득의 방식에 관한 제3편에 편입되었다. 벨기에 입법자는 이 새로운 제도가 당사자 사이에 신분관계를 창설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달리 등록동반자관계라는 용어 대신 법정동거라는 명칭을 채택하였다.²⁴⁾

(2) 2000년에 법정동거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3년부터

벨기에에서도 동성혼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법정동거제도는 그와 관계없이 병존하고 있다. 혼인에 있어서 동성혼과 이성혼의 비율, 법정동거(법정동거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관계없이 허용되는데, 이에 관한 별도의 통계는 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의 추이는 아래의 표와 같다. 2000년 이래 혼인수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법정동거수는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법정동거수가 혼인수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혼인 법정 동거: 2000-2021]²⁵⁾

연도	혼인			법정 동거
	이성	동성	합(건수)	합(건수)
2000			45,123	2,694
2001			42,110	10,796
2002			40,434	4,527
2003			41,777	5,712
2004	41,131	2,138	43,296	9,386
2005	41,087	2,054	43,141	15,513
2010	39,995	2,164	42,159	36,962
2015	43,914	1,091	45,005	40,770
2020	31,870	909	32,779	36,329
2021	39,749	1,087	40,836	37,768

2. 성립

(1) 법정동거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벨기에민법 제1475조). i) 법정동거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 ii) 원칙적으로 성년자만이 법정동거를 성립시킬 수 있다. 제한능력자가 법정동거를 성립시키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iii) 법정동거를 성립시키려는 사람은 타인과 혼인관계에 있거나 법정동거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iv) 이외에 다른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이 금지되는 혈족이나 인척간에도 법정동거는 허용된다. 또한 법정동거

19) NK-BGB/Junggeburth, Länderbericht(Frankreich), 2021, Rn. 242.

20) Frédérique GRANET-LAMBRECHATS, L'enregistrement des couples non mariés en Europe, Droit de la famille, Hors série, 1999, p. 108. 다만 일방적 해소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폭력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21) Pintens, Partnerschaft im belgischen und niederländischen Recht, FamRZ 2000, 69/70.

22) 23 NOVEMBRE 1998. - Loi instaurant la cohabitation légale.

23) 벨기에민법전 제1편(人)에는 인(人) 이외에 혼인, 친자관계, 후견 등에 관한 규정이 자리잡고 있다.

24) Pintens, Partnerschaft im belgischen und niederländischen Recht, FamRZ 2000, 69/71.

25) STABEL, La Belgique en chiffres, 2022. 10. 18.: <https://statbel.fgov.be/fr>.

는 성별에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개방되어 있다(예를 들면 2인의 자매 사이에 법정동거가 성립할 수 있다). 법정동거는 본질적으로 혼인과 완전히 다른 제도로써 성적인 결합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²⁶⁾

(2) 법정동거는 당사자가 신분등록공무원에게 법정동거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령증을 교부받으면 성립한다(벨기에민법 제1476조). 신분등록공무원은 법정동거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심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주민등록부에 기록한다. 신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법정동거가 신분의 변동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3. 효력

(1) 법정동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강행규정이 적용되며, 당사자는 이와 다른 합의를 할 수 없다(벨기에민법 제1477조). 첫째, 혼인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혼인주택의 보호에 관한 규정(벨기에민법 제215조)이 법정동거에 준용된다. 이에 따라 법정동거인 쌍방이 거주하는 주택은 그 중 1인이 단독소유자라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²⁷⁾ 둘째, 법정동거인 쌍방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생활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셋째, 법정동거인 일방이 공동생활과 자녀양육(법정동거인 쌍방이 양육하는 자녀로서 공동의 자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자녀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 다른 일방은 연대책임을 진다.

이러한 강행규정 이외에 벨기에민법은 법정동거인 쌍방의 재산관계에 대해서 별산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이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벨기에민법 제1478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정동거가 성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재산관계에 한정하여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는 데 그치

며,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해당하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은 생기지 않는다. 또한 생존 동거인에게는 법정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²⁸⁾

법정동거인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친생추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친자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지가 필요하다.

(2) 법정동거인은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강행규정을 보충하거나 임의규정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벨기에민법 제1478조. 예를 들어 법정동거는 당사자 사이에 부양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당사자는 계약으로 부양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정동거 존속 중은 물론 동거 해소 후의 부양에 관한 약정도 가능하다), 제1477조의 강행규정 및 공서양속에 위반하거나 친권, 후견, 법정상속에 관한 규정과 모순되는 조항을 두어서는 안 된다. 법정동거에 관한 계약은 주민등록부에 기입된다.²⁹⁾

4. 해소

법정동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소된다(벨기에민법 제1476조 제2항). i) 일방의 사망, ii) 법정동거인 일방이 혼인한 경우(법정동거의 상대방과 혼인한 경우이든 제3자와 혼인한 경우이든 관계없다), iii) 법정동거인 쌍방이 공동으로 신분등록공무원에게 해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iv) 법정동거인 일방이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해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 경우 신분등록공무원은 8일 내에 다른 일방에게 해소의 의사를 송달하여야 한다(벨기에민법 제1476조 제2항). 신분등록공무원은 법정동거의 해소를 주민등록부에 기록한다.

법정동거에 대해서 별산제가 적용되었던 경우에는 법정동거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법정동거 해소 후의 부양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경우를 제

26) 벨기에민법 제213조에 의하면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신의를 지키며,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동거의무에는 성적 결합의 의무도 포함된다(Heitmüller, Belgien, in: Rieck, Ausländisches Familienrecht, S. 4). 반면에 법정동거의 당사자에게는 이러한 의무 중 어느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27) 그러나 법정동거인 일방은 언제든지 일방적인 의사로 법정동거를 해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Pintens, Partnerschaft im belgischen und niederländischen Recht, FamRZ 2000, 69/72.

28) Nathalie Massager, Droit civil Tome I. Droit familial et droit patrimonial de la famille, droit des biens et droits réels, Anthemis, 2020, p. 69.

29) “Contrat de vie commune pour cohabitants”, belgium.be, Informations et services officiels, Service Public Fédéral Belge: https://www.belgium.be/fr/famille/couple/cohabitation/contrat_de_vie_commune.

외하면 부양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³⁰⁾

IV. 네덜란드

1. 도입과 현황

(1) 네덜란드에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동성 또는 이성 2인 사이에 동반자관계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등록동반자 관계).³¹⁾ 네덜란드에서도 등록된 동반자관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혼인을 원하지만 혼인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동성 간

에 혼인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으나,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성뿐만 아니라 이성간의 결합까지도 포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³²⁾

네덜란드의 입법자는 프랑스, 벨기에와 달리 등록동반자 관계에 대해서 혼인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였다. 등록동반자 관계가 성립하면 상대방의 혈족과 인척관계가 발생하고, 부부간의 권리, 의무도 똑같이 인정된다. 법정부부재산제와 배우자 상속에 관한 규정도 등록동반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2) 2001년 네덜란드에서 성립한 혼인 중 이성간의 혼인은 79,667건이었으며, 동성간의 혼인은 2,414건으로 전체 혼

[혼인 등록동반자관계: 1998-2021]³³⁾

연도	혼 인			등록동반자관계		
	이성	동성	합(건수)	이성	동성	합(건수)
1998			86,956	1,616	3,010	4,626
1999			89,428	1,500	1,757	3,257
2000			88,074	1,322	1,600	2,922
2001	79,677	2,414	82,091	2,847	5,30	3,377
2002	83,970	1,838	85,808	7,774	547	8,321
2003	78,928	1,499	80,427	9,577	542	10,119
2004	72,231	1,210	73,441	10,573	583	11,156
2005	71,113	1,150	72,263	10,699	608	11,307
2010	74,045	1,354	75,399	9,084	487	9,571
2015	62,912	1,396	64,308	12,331	441	12,772
2020	49,119	1,114	50,233	23,366	770	24,136
2021	55,227	1,192	56,419	25,321	828	26,149

30) Nathalie Massager, Droit civil Tome I. Droit familial et droit patrimonial de la famille, droit des biens et droits réels, Anthemis, 2020, p. 72.

31) 2001년 4월 1일부터는 동성간의 혼인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날부터 등록동반자관계에서 혼인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혼인에서 등록된 동반자관계로의 전환도 가능하게 되었다.

32) 1990년 10월 19일 네덜란드 대법원은 신분등록공무원으로부터 동성혼의 수리를 거부당한 2인의 여성이 제기한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에서 네덜란드 대법원은 당시 네덜란드민법의 해석상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규정은 유럽인권협약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 판결문의 말미에서 네덜란드 대법원은 입법론적으로 동성간의 지속적인 동거에 일정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네덜란드의 입법자는 대법원의 이러한 의견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혼인 이외의 결합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의 연구에 착수하였다. 1994년 6월 8일 개정안은 혼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즉 이성간)에 대해서는 등록동반자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등록동반자제도는 동성 간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4년 정권교체 이후 혼인을 할 수 있으나 혼인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등록동반자제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논쟁은 결국 이러한 방향으로 귀결되었다(Boele-Woelki-Schrama, Die Rechtsstellung von Menschen mit homosexueller Veranlagung im niederländischen Recht, in: Basedow, Hopt, Kötz, Dopffel(Hrsg.), Rechtsstellung gleichgeschlechtlicher Lebensgemeinschaften, 2000, S. 57ff.). 이에 따라 1997년 7월 5일 법률(1998년 1월 1일 시행)은 동성커플뿐만 아니라 이성커플에 대해서도 등록동반자관계를 허용하게 되었다. Pintens, Partnerschaft im belgischen und niederländischen Recht, FamRZ, 2000, 69/74f. 당시에도 등록동반자관계는 동성커플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다. Nuytinck, Das neue Personen- und Familienrecht in den Niederlanden, StAZ, 2000, 72/73.

33) Marriages and partnership registrations: key figures, 2022. 6. 9.(<https://opendata.cbs.nl/statline/#/CBS/en/dataset/37772eng/table?ts=1658713430280>).

인수의 약 3%를 차지하였다. 최근까지도 이러한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 2019년에 성립한 이성간의 혼인수는 62,146건이며, 동성 간의 혼인수는 1,419건이었다(남성 간의 혼인수 675건, 여성 간의 혼인수 744건).

한편 등록동반자관계에서도 이성간의 결합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1년에 등록된 동반자관계는 3,337건인데, 이 중 동성 간의 결합은 16%를 차지하였으나, 2011년에 이 비율은 4.8%였으며, 2015년에는 3.45%에 머물렀다. 2020년에 등록된 24,136건의 동반자관계 중 23,366건은 이성간의 결합이었고, 동성간의 결합은 770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2. 성립

네덜란드민법은 등록동반자관계의 성립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i) 등록동반자관계는 이성간의 결합이든 동성간의 결합이든 관계없이 두 사람에게 한하여 허용되지만(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80조a 제1항), 이미 타인과 혼인중이거나 등록동반자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80조a 제7항). ii) 혼인이 금지되어 있는 근친간(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³⁴⁾에는 등록동반자관계도 허용되지 않는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80조a 제7항). iii) 원칙적으로 성년자만이 등록동반자관계를 맺을 수 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록 동반자관계를 맺을 수 있다. 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80조a 제6항).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신분등록공무원이 동반자관계등록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14일이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 관청에서 당사자 및 2인 내지 4인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신분등록부에 동반자관계가 기재된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80조a 제3항, 제5항, 제6항).

3. 효력

(1) 혼인에 준하는 효력

네덜란드의 등록동반자관계는 이성간의 결합에 대해서도

허용된다는 점에서는 위에서 본 벨기에 및 프랑스의 입법례와 같지만, 효력에 있어서는 위의 두 입법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의 PACS나 벨기에의 법정동거가 혼인에 비하여 ‘가벼운’ 결합인 반면에 네덜란드의 등록동반자관계는 혼인에 준하는 ‘무거운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즉 혼인의 효력이 등록동반자관계에서도 거의 대부분 인정된다. 따라서 등록동반자관계는 효력면에서 혼인과 별 차이가 없다).

(2) 등록동반자 사이의 관계

등록동반자와 상대방의 혈족 사이에는 인척관계가 발생한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3조 제2항). 또한 등록동반자는 혼인한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성(姓)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자신의 성 앞이나 뒤에 배우자의 성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9조. 네덜란드에서는 혼인 후에도 부부는 각자 자신의 성을 유지하며, 다만 원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성을 사용할 수 있다).

부부간의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도 등록동반자관계에 준용된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80b조). 이에 따라 등록 동반자는 서로에 대하여 신의를 지키고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81조). 등록동반자는 자녀의 양육비를 포함하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각자의 수입과 재산에 따라 책임을 진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84조).

등록동반자관계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도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80조b, 제93조). 동반자관계의 등록 전에 당사자들이 법정재산제를 배제하고 다른 유형의 재산제를 선택하는 계약을 하지 않으면, 법정부부재산제인 공유제³⁵⁾가 등록동반자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이로써 네덜란드의 입법자는 부부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등록동반자관계에 대해서도 강한 경제적 유대관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등록동반자는 부부와 마찬가지로 서로 부양의무를 부담하며(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80조b, 제81조), 상속법에 있어서도 배우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네덜란드민법 제4장 제8조).

34) 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41조.

35) 이에 따라 등록동반자관계 성립 시 존재했던 재산과 등록동반자관계의 존속 중에 취득한 재산(채무 포함)은 원칙적으로 쌍방의 공동재산이 된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94조). 이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증여자가 공동재산에 속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수증재산이 있다.

(3) 등록동반자와 자녀의 관계

등록동반자의 일방과 상대방의 자녀 사이에는 인척관계가 발생한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3조 제2항). 등록동반자 쌍방은 그들의 가족에 속한 미성년자녀(공동의 자녀, 상대방 동반자의 자녀)³⁶⁾를 보호, 양육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80조b, 제82조). 모가 단독친권자인 경우 모와 모의 등록동반자는 협의하여 법원에 공동친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³⁷⁾이 없는 한 지방법원의 친권 등록부에 공동친권이 기재됨으로써 공동친권이 성립한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252조, 제253조t).

등록동반자관계에 있는 여성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의 남성 동반자가 자녀의 부가 된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199조 a호. 혼인 중에 아내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친생추정규정에 의하여 모의 남편이 자녀의 부가 되는 것과 같다).³⁸⁾ 2인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등록동반자관계에서 동반자의 일방이 자녀를 출산한 때에는, 그 자녀가 익명의 정자제공에 의하여 포태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 동반자가 자녀의 모가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자녀에게 2명의 모가 생기는 결과가 된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198조 제1항 b호).³⁹⁾ 어느 경우 이든(모의 동반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와 모의 등록동반자는 자녀의 부모로서 공동친권자가 된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253조aa).

등록동반자관계에 있는 쌍방은 자녀를 공동으로 입양할 수 있으나, 두 사람이 입양 전 3년간 동거해야만 하고 그 자녀를 1년간 부양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등록동반자 일방이 상대방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

야 한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227조 제2항, 제228조 제1항 f호).

4. 해소

(1) 등록동반자관계의 해소에 관한 규정 역시 대체로 혼인의 해소에 관한 규정과 유사하지만,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이혼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만 한다)에서 이혼과 차이가 있다. 등록동반자관계는 일방 당사자의 사망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소된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80조c). i) 일방 당사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후 다른 일방이 새로 혼인하거나 등록동반자관계를 맺은 때 ii) 등록 동반자관계의 쌍방이 해소에 합의한 경우. 이 경우 당사자는 변호사 또는 공증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합의서를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한 합의⁴⁰⁾가 신분등록부에 기록되면 등록동반자관계는 해소된다(합의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제출되어야만 신분등록부에 기록된다. 네덜란드민법 제80조d 제3항). 다만 합의에 의한 등록동반자관계의 해소는 법개정에 의해서 2009년 3월 1일부터 등록동반자 쌍방에게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었다(네덜란드민법 제80조c 제3항).⁴¹⁾ iii) 등록동반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등록동반자관계의 해소 판결을 한 경우. 사전 별거와 같은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당사자의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청구인이 재판절차에서 진지하고 일관되게 해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파탄 사실이 충분히

36) Reinhartz·Vlaardingerbroek, in: Süß-Ring(Hrsg.), Eherecht in Europa, Niederlande, Rn. 148.

37) 예를 들어 모 이외에 이미 다른 친권자가 있는 경우나 등록동반자가 친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

38) 2013년 11월 27일 법률(2014년 4월 1일 시행)에 의하여 이성 등록동반자관계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혼인중의 자와 마찬가지로 친생추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성 등록동반자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와 모의 남편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발생한다. 이 개정에 의해서 등록동반자관계는 혼인에 더욱 근접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9) Boele-Woelki, Jüngste Änderungen und Vorschläge im niederländischen Personen-und Familienrecht, FamRZ 2015, 1554/1555.

40) 이 합의에는 등록된 동반자관계가 파탄되었으며 그 관계의 해소를 원한다는 등록동반자 쌍방의 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네덜란드민법 제80조d 제1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동반자관계 해소 후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는 전 동반자에 대한 부양, 임차주택에 거주했던 경우 누가 주택의 임차인이 될 것인지, 등록동반자 일방 또는 쌍방이 소유하는 주택에 거주했던 경우 누가 주택을 사용할 것인지, 공유재산의 분할, 연금에 대한 권리의 분할 등.

41) 미성년자녀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등록동반자관계의 해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동반자관계 해소 후의 자녀양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네덜란드민사소송법 제815조, 제828조). Reinhartz·Vlaardingerbroek, Niederlande, in: Süß-Ring(Hrsg.), Eherecht in Europa, Rn. 149.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파탄 사실의 증명은 어렵지 않다.⁴²⁾ 등록동반자관계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분등록부에 판결이 기록되면 해소된다(네덜란드민법 제80조e 제2항). iv) 등록동반자관계를 혼인으로 전환시킨 경우(네덜란드민법 제80조g 제3항).⁴³⁾

(2) 등록동반자관계 해소 후 부양이 필요한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서 부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네덜란드민법 제80조e, 제157조), 상대방이 등록동반자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연금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도 절반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네덜란드 연금청산법 제2조). 등록동반자관계가 해소되면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관계의 청산으로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정재산제인 공유제가 적용되었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의 절반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80조b, 제100조 제1항).

V. 정리와 분석 - 시사점의 모색

1. 등록동반자관계의 성격

넓은 의미에서의 등록동반자제도는 크게 동성간의 결합만을 허용하는 입법례(편의상 제1유형의 등록동반자관계라고 한다)와 동성 및 이성간의 결합을 아우르는 입법례(제2유형의 등록동반자관계라고 한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유형의 등록동반자관계는 처음부터 동성혼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었으므로, 동성혼이 도입되면서 더 이상 존속해야 할 이유를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1유형의 등록동반자관계를 도입했던 나라들이 동성혼의 입법과 동시에 더 이상 등록동반자관계의 성립을 허용하지 않게 된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다만 예외적으로 오스트리아는 동성혼을 도입하면서 등록동반자관계를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성간에 대해서까지 개방하는 개정을 단행하였다).⁴⁴⁾

이와 달리 제2유형의 등록동반자관계는 처음부터 단순히 동성혼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성격을 넘어서 전통적인 혼인제

도에 대한 대안으로 고안되었다. 따라서 제2유형의 등록동반자관계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동성혼이 도입된 후에도 등록동반자관계가 독자성을 지니고 존속할 뿐 아니라 그 성립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등록동반자관계의 효력과 해소

- ‘가벼운 결합’ 또는 ‘무거운 결합’

(1) 효력 면에서 보면 제1유형의 등록동반자관계는 동성혼에 대한 대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각국의 입법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동성의 등록동반자관계에 혼인과 유사한 지위를 인정하려고 시도하였다(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등록동반자가 공동으로 자녀를 입양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는다). 반면에 제2유형의 등록동반자관계를 도입한 나라들에서는 각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등록동반자관계의 효력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네덜란드와 같이 등록동반자관계에 혼인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한 입법례가 있는가 하면, 벨기에의 법정동거와 같이 혼인과 비교하여 현저히 약한 효력을 인정한 입법례도 있다(프랑스의 PACS는 두 입법례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벨기에의 입법례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등록동반자관계에도 법정부부재산제인 공유제가 적용되고, 관계의 해소 시에는 재산관계의 청산으로서 재산분할(연금분할 포함)이 이루어지는 반면, 벨기에의 법정동거와 프랑스의 PACS는 원칙적으로 별산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소 시에도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을 제외하면) 이러한 재산관계의 청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네덜란드는 등록동반자 사이에 부부와 동일한 부양의무를 인정하지만(해소 후의 부양의무도 인정된다), 벨기에의 법정동거에서는 아예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PACS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만, PACS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무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부관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PACS 해소 후의 부양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42) Vinnen, Niederlande, in: Rieck, Ausländisches Familienrecht, S. 11f.

43) 반면에 2009년 3월 1일부터 혼인에서 등록동반자관계로의 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44) 오스트리아에서는 2010년부터 동성간의 등록동반자관계가 허용되었고, 2019년부터 동성혼이 인정되었는데, 2019년부터 등록동반자관계를 이성간의 결합에 대해서도 개방하였다. 반면에 독일,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는 동성혼을 입법하면서 동성간의 등록동반자관계의 성립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2) 이러한 차이는 관계의 해소에서도 나타난다. 네덜란드에서는 등록동반자관계의 해소에 관한 규정도 이혼에 관한 규정과 거의 유사하지만(물론 당사자가 해소에 합의한 경우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 법원의 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혼과 차이가 있다), 벨기에의 법정동거와 프랑스의 PACS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방적인 의사로도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혼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3)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는 위와 같은 차이점은 해당 국가에서 등록동반자관계의 성립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의 통계에서 본 바와 같이 프랑스의 PACS와 벨기에의 법정동거는 최근 혼인수를 추월할 정도로 증가한 반면, 네덜란드의 등록동반자관계는 혼인수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비율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국가의 상당수 시민들이 혼인 이외에 ‘혼인보다 가벼운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선 부담이 적은 등록동반자관계에서 출발하여 관계가 안정되고 신뢰가 쌓이면 언제든지 혼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등록동반자관계를 선택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등록동반자관계의 도입과 출산율의 변화

한때 우리사회에서는 프랑스의 PACS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산발적으로 제시된 적이 있다.⁴⁵⁾ 혼인제도의 대안으로서 프랑스의 PACS와 같은 ‘가벼운 제도’를 도입하면 혼인을 부담스러워하는 젊은 세대가 비교적 쉽게 법적인 동거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그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 논거였다. 그러나 실제로 프랑스에서 PACS가 도입된 후 출산율이 증가하였는가를 살펴보면, PACS의 도입과 출산율 사이에 의미있는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프랑스에서 PACS가 시행된 것은 1999년 11월 16일이었으므로, 2000년부터 PACS가 본격적으로 성립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1999년 이성간 PACS 성립수: 3,551, 2000년 이성간 PACS 성립수: 16,859). 이 시기 출산율의 변화추이를 보면 1999년 출

생아수 744,800명, 2000년 774,800명, 2001년 770,900명, 2002년 761,600명으로 나타난다. 한편 최근의 이성간 PACS 성립수는 1999년 도입 무렵과 비교하여 약 10배 가량 증가하였는데(2017년 188,233, 2018년 200,282, 2019년 188,014), 프랑스의 출산율은 그에 비례하여 높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2017년 출산아수 730,200명, 2018년 719,700명, 2019년 714,000명). 이러한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전통적인 혼인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PACS와 같이 보다 ‘가벼운 관계’를 도입하는 것이 출산율을 제고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별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프랑스에서도 PACS의 도입이 출산율을 높인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프랑스의 PACS나 벨기에의 법정동거와 같은 제도는 그 관계의 해소에 있어서도 이혼보다 훨씬 간단한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사회에 프랑스의 PACS와 유사한 제도가 도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해소에 관하여도 현행 이혼법보다 간단한 절차가 규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미성년자녀의 보호와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점을 드러낼 수도 있다. 혼인보다 가벼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젊은 남녀의 결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각자의 자유이겠지만, 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보호 문제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혼인보다 가벼운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해소율도 이혼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을 자녀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자녀의 출생에만 집착하지 말고 태어난 자녀의 복리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네덜란드에서 처음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등록동반자관계의 해소가 아무 제한없이 허용되었다가 그 후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민법이 개정된 것은 이러한 고민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4. 우리사회의 사실혼과 등록동반자관계

위에서 본 나라들은 등록동반자관계를 도입하기 전까지 혼인 이외의 이성(혹은 동성)간의 결합에 대해서 혼인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⁴⁶⁾ 우리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성간의 동거에 대해서는 사실혼이라는 이름으로 혼인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인정해왔다. 즉 독

45) 예를 들면, “동거커플 인정 뒤 출산율 오른 프랑스…한국은 실태도 몰라”, 한겨레신문 2016년 12월 17일.

46)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지금도 비혼생활공동체에 대해서 혼인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Ivo, Deutschland,

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나라에서는 등록동반자관계가 도입되기 전까지 혼인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이성간의 결합이었던 반면, 우리사회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혼인(법률혼) 이외에 혼인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사실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실혼에 의해서 혼인이라는 법적인 제도의 틀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보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사회에 굳이 등록동반자관계와 같은 제도가 필요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는 사실혼과 위에서 본 등록동반자관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우리사회에서 사실혼은 이성간의 결합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지만, 등록동반자관계는 입법정책에 따라 동성간의 결합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도 있고, 이성간과 동성간의 결합을 아우르는 제도로 마련될 수도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사실혼 부부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인정되고 사실혼이 생전에 해소될 때에는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지만, 등록동반자관계에서 당사자 사이의 부양의무나 해소 시의 재산분할이 인정되는가는 각 나라의 입법정책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 벨기에의 법정동거에서는 부양의무나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며, 프랑스의 PACS에서는 부양의무는 인정되지만, 해소 시의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에 네덜란드의 등록동반자관계에서는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법정재산제로서 공유제가 적용되는 결과 해소 시에도 공유제의 법리에 따라 재산이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분할된다. 또한 사망으로 인한 해소 시에는 생존 등록동반자에 대해서 상속권도 인정된다. 상속권까지 인정된다는 점에서 네덜란드의 등록동반자관계는 우리나라의 사실혼보다 더욱 혼인에 가까운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효력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사실혼은 프랑스의 PACS나 벨기에의 법정동거보다는 무거운 결합인 반면, 네덜란드의 등록동반자관계에 비하면 가벼운 결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만약 우리사회에 등록동반자관계를 도입한다고 가정할 때 네덜란드와 같은 무거운 결합을 모델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유형의 등록동반자관계는 효력면에서 사실상 혼인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혼인 대신 굳이 등록동반자관계를 맺을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전술한 바와 같이 네덜란드의 등록동반자관계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혼인과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사회에서 등록동반자관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사실혼보다 가벼운 결합의 유형(예를 들어 프랑스의 PACS나 벨기에의 법정동거)에 맞추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등록동반자 사이에 부양의무는 인정하되, 등록동반자관계 존속 시는 물론 해소 시에도 별산제의 법리를 그대로 관찰시킴으로써 재산분할(연금분할 포함)청구는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사실혼관계는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쉽게 해소될 수 있는데, 등록동반자관계의 해소는 각 나라의 입법정책에 따라 사실혼의 해소와 같이 간단하게 규정될 수도 있고, 이혼과 유사하게 정해질 수도 있다. 프랑스의 PACS와 벨기에의 법정동거는 우리나라의 사실혼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으며, 이혼절차와 비교하여 매우 간단하다(다만 등록동반자관계를 해소하려면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혼과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사실혼과 다른 점은 일방적인 해소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의무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는 등록동반자관계의 해소에 대해서 이혼과 유사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등록동반자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해소되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등록동반자 쌍방이 관계의 해소에 합의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해소가 가능하며, 바로 이점에서 이혼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합의에 의한 해소는 당사자에게 미성년자녀가 없는 때에만 허용된다). 우리나라에 등록동반자관계를 도입한다고 가정할 때, 위에서 본 것처럼 효력면에서 혼인보다 가벼운 관계로 설정한다면, 그 관계의 해소에 관하여도 이혼보다 간단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사실혼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등록동반자 쌍방이 공동으로 양육하는 미성년자녀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개입에 의하여 자녀에 관한 법률관계(양육자 및 친권자의 지정, 양육비의 부담, 면접교섭 등)를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사실혼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그 존재가 공적인 증명서에 의해서 증명될 수 없는 반면, 등록동반자관계는 신분등록부 등에 기록되므로 필요한 경우 증명서를 통해 간단히 증

in:Süß-Ring(Hrsg.), Eherecht in Europa, Rn. 125; Schür, Belgien, in:Süß-Ring(Hrsg.), Eherecht in Europa, Rn. 163; Döbereinerin, Frankreich, in:Süß-Ring(Hrsg.), Eherecht in Europa, Rn. 257-260; Reinhartz·Vlaardingerbroek, Niederlande, in:Süß-Ring(Hrsg.), Eherecht in Europa, Rn. 153.

명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사실혼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소송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등록동반자관계에서는 이미 동반자관계가 신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증명이 가능하므로 그와 같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등록동반자에 대해서 법률혼의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와 세법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데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제로 등록동반자관계를 도입한 나라들에서는 등록동반자에 대해서 법률혼의 배우자에 준하여 각종 사회보장혜택과 세법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⁴⁷⁾ 이는 동반자관계의 등록을 전제로 해서 가능한 것이므로, 우리사회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VI. 맺음말

1980년대 후반 이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동성간의 등록동반자관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제1유형의 등록동반자관계). 동성간의 등록동반자관계는 동성혼의 대안이라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각국의 입법자는 이에 대해서 혼인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동성간의 등록동반자관계는 동성간의 준혼이라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 후 이러한 나라들에서 본격적으로 동성혼이 입법되기 시작하면서 동성간의 준혼이라는 성격을 지닌 동성간의 등록동반자관계는 존속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동성간의 등록동반자관계를 도입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동성혼의 입법과 더불어 더 이상 등록동반자관계의 성립을 허용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프랑스와 벨기에,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들은 동성간과 이성간의 결합을 아우르는 새로운 유형의 등록동반자제도를 마련하였다(제2유형의 등록동반자관계).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동성간은 물론 이성간의 결합을 허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

는 각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혼인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한 ‘무거운 결합’을 선택한 입법례가 있는가 하면(네덜란드의 등록동반자제도), 혼인과 비교하여 성립과 효력, 해소에 있어서 ‘가벼운 결합’을 선택한 입법례도 있었다(프랑스의 PACS, 벨기에의 법정동거). 이러한 차이는 해당 국가에서 이성간 등록동반자관계의 성립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프랑스의 PACS와 벨기에의 법정동거는 혼인수를 추월할 정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반면에 네덜란드의 등록동반자관계는 혼인수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제2유형의 등록동반자관계가 전통적인 혼인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국가의 상당수 시민들이 혼인 이외에 ‘혼인보다 가벼운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혼 시의 재산 분할(연금분할),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만 하는 까다로운 이혼 절차 등 혼인에 수반되는 부담을 꺼리는 젊은 세대가 혼인에 비하여 부담이 적은 새로운 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간사회가 오랜 기간 동안 남녀의 결합으로서 당연하게 여겨왔던 혼인제도가 도전을 받고 있다. 그 배경에는 부부간의 긴밀한 연대관계에 기초한 혼인제도에 대한 피로감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 세대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혼인에 대한 가치가 새로운 세대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혼인에 비하여 성립과 효력 및 해소에 있어서 가벼운 제도인 등록동반자관계가 도입, 확산된 배경에는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변화의 영향권 밖에 머물면서 혼인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과 혼인제도를 미래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혼인제도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의식변화와 그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주목된다.

47) NK-BGB/Junggeburth, Länderbericht(Frankreich), 2021, Rn. 235, 238; 박준혁, “프랑스의 PACS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4권 제3호(2022), 137면 이하 참조; Reinhartz-Vlaardingerbroek, Niederlande, in: Süß-Ring, Eherecht in Europa, Rn. 62; Schür, in: Süß-Ring, Eherecht in Europa, Belgien, Rn. 94; Münch, Familienrecht in der Notar- und Gestaltungspraxis(3. Aufl. 2020), Rn. 376ff; 이정훈, “동성혼과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제32권 제2호(2016), 83면 이하 참조.

피해자의 오랜 정신과적 소인이 갈등의 원인이라 하더라도 행위자가 상담 통해 가정폭력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면서 폭력 재발 가능성은 없어져

2020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6회, 교육강좌 2회
(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집단상담 3회(비대면 진행)
피해자(아내) 전화 연락 및 문자메시지 발송 2회
등 13회

상담기간

2021. 1. 20. ~ 2021. 7. 16.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25년이 경과하였으며, 부부 사이에 1녀(24세)가 있다. 행위자는 회사원이고 피해자는 주부이다.

행위자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우울증이 있어 10년 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고, 이후 지금까지 매일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

본 사건은 2020. 7. 사건당일 행위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보니 안경이 없기에 피해자가 숨졌다고 생각하고 내놓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1회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폭행을 한 것으로, 임시조치로 접근금지 결정을 받아 모텔에서 지내다가 피해자가 찾아와 화해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아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에 의하면 사건 발생 후 욕실 바닥에 안경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가져다 놓은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감정 기복이 심하며, 낮에 잠을 자고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음악을 듣는 등 행동을 하여 가족들이 힘들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사건 당시도, 현재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10점 만점에 5점 이하로 평가하였지만, 피해자가 행위자의 물건을 감추지 않고 이전보다 상태가 좀 나아졌고 자신이 말을 조심하고 짜증을 덜 낸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와의 생활에 익숙해졌고 직장 생활도 무리 없이 하고 있으며, 자녀와 소통 문제는 없었다.

행위자는 본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었으며 상담기간 중 폭력 재발은 없었다. 행위자는 피해자의 오랜 정신과적 소인을 갈등요인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상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되지 않았고, 연락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에도 연락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상담은 진행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므로 본 상담에서는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마음 및 태도 점검과 대화법,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관점의 전환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주 목표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종결상담시, 행위자는 피해자가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여 충돌이 덜하고,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는 그 자체로 잘 지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오랫동안 받으며 부부간 소통이나 관계가 원활하지는 않아서 부부관계 만족도를 점수로 평가할 여지는 없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향후 폭력을 하지 않을 것이고 피해자와도 지금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가정법률상담사례

이 혼 16

■ 인터넷 상담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될 수 있다

Q 문 63 | 제 아내는 10년 전부터 잦은 외박과 가출을 반복하고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밥도 따로 해 먹고 대화도 메모지로 하며 자꾸 이혼하자고 합니다. 저도 이혼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나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도 나뉘야 하고 특히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아내가 즐겁게 살 것을 생각하니 껄뚱하여 이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겠다는데 혼인파탄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데도 이혼이 되나요?

A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또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하 역시 이혼을 원하나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인가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에게 폭력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성인이 된 후 집을 나와 혼자 살면서 아버지의 폭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와 함께 살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하여 제집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저도 어머니가 그간 겪어온 일들을 적은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대신 저에게 전화하여 제가 아버지의 잘못이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저를 아버지의 호적에서 파버리고 아버지의 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는 좋아하지 않지만 제 성을 바꿀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 제가 아버지의 호적에서 지워지고 제 성이 변경되는지 걱정됩니다.

A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들의 신분 관계를 기록하던 호주제는 2008년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개인별로 본인의 신분 관계를 나타내는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기재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에는 성인 자녀와 친생부모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귀하의 기재를 삭제하거나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버지의 기재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5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조항에 나타나 있듯이 성과 본의 변경은 “자의 복리”를 위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만을 이유로 하여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성은 이름과 더불어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므로, 성인 자녀 본인이 자기 성분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성본변경이 허가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애프터썬

감독 샬롯 웰스

출연 폴 메스칼, 프랭키 코리오, 셀리아 롤슨-홀



열한 살 소피(프랭키 코리오)는 새학기 시작 직전의 여름휴가를 아빠 켈럼(폴 메스칼)과 함께 보낸다. 서른한 살밖에 안된 켈럼은 남들 눈에 종종 소피의 나이 많은 큰오빠로 여겨지곤 한다. 튀르키예의 어느 해변 리조트에 머물렀던 며칠간의 휴가는 소피와 켈럼이 번갈아 들었던 캠코더에 조각조각 기록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소피(셀리아 롤슨-홀)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다시 한 번 옛 캠코더를 들여다보며 추억을 더듬는다.

샬롯 웰스의 장편 데뷔작 <애프터썬>은 2022년 칸 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에 초청된 이래 전 세계 영화제 54개 부문을 수상하며 “오랫동안 이 영화의 햇볕에 그을리고 싶다”(『Empire Magazine』)는 평가와 함께 수많은 매체로부터 ‘올해의 영화’로 선정되었다. 이 작고 고요한 영화가 그토록 많은 이들의 영혼을 사로잡아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관객들 모두가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안과 긴장을 느끼던 어린 시절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 내가 꿈꿨던 미래가 사실 결코 가닿을 수 없는 무언가였음을 알아버린 성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켈럼은 <애프터썬>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존재다. 우리는 또래에 비해 훨씬 조숙하고 영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마음을 모두 꿰뚫어 볼 수 없는 소피의 시선을

통해서만 켈럼의 내외부를 더듬어 그려볼 수 있다. 켈럼은 스무 살이 되기도 전에 아이 아빠가 되었고, 소피의 엄마와는 일찌감치 헤어졌지만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양육의 공동 책임을 열심히 수행하려 노력 중이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출신이지만 일찌감치 고향을 떠나 영국 런던 근교에 살고 있다. 아직 뚜렷한 직업은 없는데, 곧 돈이 생길 구석이 있고 집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하는 걸 보면 뭔가 수상쩍은 영역에 발을 디딘 게 아닌가 싶다. 소피 앞에서 언제나 웃는 낮으로 다정하게 말을 걸지만, 소피에게 등을 돌리거나 무방비하게 허공을 향할 때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무표정해지거나 우울로 뒤덮인다. 갓 서른을 넘긴, 자신이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이해하지 못해 깜짝 놀라 입을 멍하니 벌리고 있는 것 같은 아빠. 어린 딸이 아무렇지도 않게, 딱히 뭔가를 의식해서가 아닌 채로 우연히 인생의 비애와 고통의 순간들을 살짝 건드릴 때마다 충격에 빠지는 아빠. “태어난 곳을 떠나게 되면 다시는 그곳에 소속감을 느낄 수 없다”면서 뒤에 남겨둔 것을 돌아보지 않은 채 그저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는 아빠. 켈럼은 소피가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던 여름휴가를 최대한 즐겁고 행복하게만 채워주려 노력하지만, 그 자신에게 시시때때로 밀려들어 오는 내면의 붕괴를 막지 못한다. 그의 위태로운 영혼은 거친 밤바다의 파도에, 뺑뺑거리는 자동차 앞에, 허약한 테라스 난간 위에서 자꾸 서성거린다.

성인이 된 소피가 기억을 더듬다가 어떤 깨달음에 도달하는 클라이맥스에 다다를 때 관객들에게 닥쳐오는 감정의 파고는 어마어마하다. 여름은, 휴가는 언젠가는 끝이 난다. 내내 햇빛이 쨍쨍했던 튀르키예의 푸른 해변은 소피에게 잊을 수 없는 즐거운 방학의 공간으로 남아 있었지만,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뒤 그때의 아빠와 비슷한 나이가 된 소피는 불현듯 서른 살의 아빠가 겪고 있었던 위태로운 우울의 징조를, 누구와도 공유하지 못했던 그의 상실감과 허무함을 깨닫는다. 열한 살의 자신을 바라보던 서른 살 아빠의 따뜻하고 외로운 마음을, 이제 서른 살을 넘기고 그 자신도 아이를 키우는 성인이 된 딸은 뒤늦게 마주한다. 사랑과 지식은 언제나 평등하게 교환되지 않는다. 20년 동안 소피와 켈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 켈럼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텼을지의 여부조차 우리는 그저 어두운 짐작만 할 뿐이다.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에 삽입된 퀸의 노래 <Under Pressure>는 음악과 영상의 조합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익숙한 대중음악의 아우라가 어떤 식으로 아무런 설명 없이 주인공의 감정을 완벽하게 누설하는 트릭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웅변하는 가장 좋은 예로 꼽힐 것이다.

김용언 영화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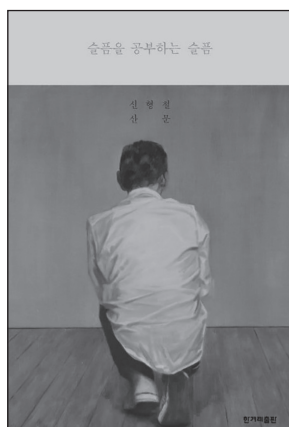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신형철 산문

신형철 지음

한겨레출판, 2022(초판 11쇄)



한강 작가의 소설을 연이어 읽다가 평문도 정말 좋아서 찾아 읽게 된 신형철 문학평론가의 두 번째 산문집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다.

언젠가부터 나는 타인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혹은 궁극의 감정은 ‘연민’이라 생각하고 있다. 너와 나 우리 모두 ‘던져진 존재’, 한세상을 살다가는 찰나의 존재라는 시선으로 서로를 볼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갈등과 불필요한 감정의 낭비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인간이 배울 만한 가장 소중한 것과 인간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것은 정확히 같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슬픔이다. (...) 타인의 슬픔에 대해 서라면 인간은 자신이 자신에게 한계다. 그러나 이 한계를 인정하되 긍정하지는 못하겠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슬퍼할 줄 아는 생명이기도 하니까. 한계를 슬퍼하면서, 그 슬픔의 힘으로, 타인의 슬픔을 향해 가려고 노력하니까.” 제목처럼 책의 큰 주제는 ‘슬픔’이다. 지은이는 영화 〈킬링 디어〉를 통해 타인의 슬픔을 결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한계를 보고 그러나 타인의 슬픔을 결코 알 수 없으리란 결말을 알면서도, 다른 이의 슬픔을 공부하는 것이 인간이기도 하다고 쓰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다른 이의 슬픔을 외면하는 자는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일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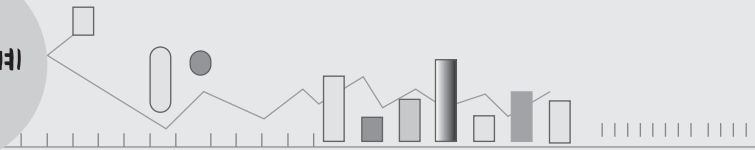
이 책은 전체 5부와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1부는 ‘슬픔’을 공부한 글을 묶었다. 헤로도토스 《역사》에서부터 헤밍웨이, 박형준과 김경후의 시를 통해 작품 속의 슬픔, 허무함, 덧없음, 상실 등을 읽어간다. 2부는 카뮈, 보르헤스, 제발트부터 권여선, 박완서, 임철우 등의 ‘소설’을 종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 오래 잊었던 임철우 작가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3부는 국정농단, 천안함 사건까지 사회적 이슈

를 다루었고, 4부는 ‘시’를 주제로 우리는 왜 시를 읽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릴케, 김수영부터 황인찬 그리고 비틀스 노래 〈노위전 우드(Norwegian Wood)〉가 등장하는 무라카미 하루키까지, 다양한 시와 노래를 읽는다. 그리고 문화 전반을 다룬 5부와 마지막으로 부록까지 마음에 와닿는 명징한 문장이 가득한데 그것은 지은이의 사회와 역사에 대한 깊은 사유가 바탕에 있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사회를 다룬 3부 전체의 제목은 ‘우리의 나날’인데 그 가운데 ‘해도 되는 조롱은 없다’ ‘저급한 이야기꾼들의 신’ 같은 칼럼은 길지 않은 글에 현재 진행형이면서 나날이 저급해지는 우리 사회 저변의 정치, 종교 전반의 문제를 잘 짚어준다. 지은이의 슬픔과 절망과 분노를 내 것처럼 느끼면서 읽었다.

무엇보다 이제 4월은 ‘세월호’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나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그 소식을 처음 들었던 때의 상황을 아직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뜻이다. 지은이가 이렇게 타인의 슬픔에 대한 공부와 그 어려움을 강조하는 것은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이 타인의 슬픔에 유독 무심하고 잔인한 시간이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한다. “그들(=세월호 희생자들)이 죽어가는 동안 행방불명 상태였고 이후에도 유가족을 철저하게 외면한 한 냉혈한”, “광화문에서 단식 중이던 세월호참사 유가족 앞에서 피자를 시켜 먹는 이들”, 그리고 “타인의 고통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말”은 슬픔 공부의 필요성과 어려움을 절감하게 하는 것이다.

더불어 최근 부쩍 책 표지로 많이 등장하는 팀 아이텔의 그림을 사용한 책 표지가 강렬하고, 이 책과 같이 주문했던 지은이의 책 한 권이 읽을 것으로 남아 있어 기쁘다.

이숙현 편집부장



2023년도 정기총회

본소는 지난 3월 23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차명희 이사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총회는 개회, 국민의례, 인사말씀, 전회 회의록 낭독, 감사 보고, 안건, 폐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건으로는 2022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가 있었고 모든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관련사진 2면)

2023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업무협력기관 워크숍

지난 3월 17일 본소 강당에서 2023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업무협력기관 워크숍이 있었다. 전국협력기관 임직원들과 본부 객배희 소장 및 상담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된 이 날 워크숍은 1부 각 기관소개 및 인사, 2부 전국업무협력기관 소송구조 업무 등 안내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었다.

본소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지부사업을 종료하였고 이후 前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송구조 연계 등 종전 사업의 대부분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뜻을 같이한 바 있었다. 그동안 본소는 전국업무협력기관과의 워크숍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이 날 본소와 전국업무협력기관은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각 지역사회의 저소득, 취약계층들을 위한 다양한 법률구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워크숍 1부에서는 객배희 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전국업무협력기관 소개 및 인사가 있었고, 이어 점심 식사 후 2부에서는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의 사회로 전국업무협력기관 소송구조 사업 등 안내(복미영 상담위원)와 질의·응답 그리고 전국업무협력기관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등으로 진행되었다.

당일 전국업무협력기관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전국

업무협력기관 소장·이사장 외 직함 및 존칭 생략, 지역 가나다순임).

구리·남양주 - 구리가정·성통합상담지원센터 전병화 센터장 / 동해 - 사단법인 바로 김혜동 소장 / 송도 - 인천송도가족상담소 이영미 소장, 주아미 / 수원 - (사)경기가정상담소 남부지부 수원가정상담소 박윤선 소장, 정희지 / 순천 - 순천여성상담센터 채미진 / 울산 - (사)울산 성·가족상담소 정민자 소장, 윤영해 / 익산 - (사)익산가정상담센터 김성란 센터장, 김현경 / 인천 - 인천가정상담센터 한현애, 박지훈 / 전주 - 전주가정상담센터 신유순 센터장, 표정애 / 정읍 - 정읍가정상담센터 송경숙 센터장, 이현숙 / 중구 - 양실가정상담센터 제오복 센터장, 양영재 / 제천 - 제천가정상담센터 이경미 센터장, 이동주, 박미현 / 창원·마산 - 창원가정상담센터 서정희 센터장 / 청주 - (사)청주가정폭력상담소 정복자 소장, 이자영, 김소라, 김두란

(관련사진 2면)

2023년도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직원재교육 겸해

본소의 2023년도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김상용)가 지난 3월 29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직원재교육을 겸해 이루어진 이날 회의에는 객배희 소장을 비롯해 본소 직원들과 본소의 가족법개정자문위원인 김상용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본소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장), 정미화 변호사(법무법인 남산 대표 변호사),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전문센터장), 현소혜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주제발표를 위해 박인환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상용 교수의 '등록동반자 관계는 혼인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박인환 교수의 '고령인지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의사결정지원'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어 배인구 변호사가 현재 상담소가 진행 중인 '유해인도 기획소송'의 진행 경과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련사진 2면)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지난 3월 23일 본소 교육프로그램인 김병후 원장(정신과전문의, 본소 이사)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가 zoom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너의 의미'가 주제로, 강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타인인 '너'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타인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사실은 자명하지만 우리는 가장 가까운 타인과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였다. 또한 '너'라는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아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너'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되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 강의는 4월 27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영역을 철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으나, 방역지침의 변화에 따라 본소에서도 점진적으로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다.

3.8.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서비스전문인력 역량강화교육(가족법)

- 복미영 상담위원

3.30. 일자리지원센터 노숙인 신용회복 교육

- 전규선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전규선, 천다라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장상담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3월 23일 법의 날 기념 캠페인(4월 14일 진행 예정)을 위한 사전협의차 여의나루역 진재옥 역장을 만나 장소 협조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조은경 상담위원이 같이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3월 22일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도 법관연수 - 가정보호·아동보호재판실무-에 참여한 법관 67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사건에서의 상담의 실제"에 대하여 오프라인 및 원격 강의를 하였다.

2023년 3월 상담통계

총 건수 4,761			
법률상담 (3,806)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1,020	2,691	94	1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799	66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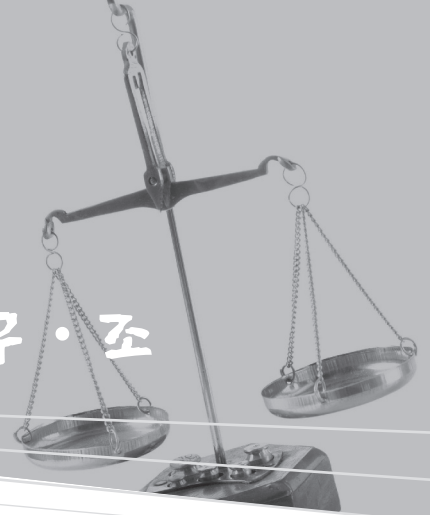
• 인터넷 정보 이용 60,945 건

2023년 3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761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806건(79.9%), 화해조정 799건(16.8%), 소장 등 서류작성 66건(1.4%), 소송구조 90건(1.9%)이었다.

법률상담 3,806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3년 2월에 비해 친권·양육권(3.2%→4.4%), 양육비(8.0%→8.7%), 부양(1.2%→1.5%), 개

명(1.2%→1.3%), 파양(0.2%→0.3%), 가사절차(7.6%→9.0%), 가사기타(13.1%→14.6%), 파산(2.4%→2.8%)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806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020건(26.8%), 전화상담 2,691건(70.7%), 인터넷상담 94건(2.5%), 순회상담 1건(0.0%)이었다.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게임 중독에 빠져 아내를 폭행하고
자녀를 학대한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2-2-283

담당 : 김병철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0대)와 피고(남, 40대)는 2001년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1(남, 10대), 사건본인2(여, 10대), 사건본인3(여, 10세 미만)을 두고 있다. 피고는 게임에 중독되어 원고와 사건본인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특히, 2022년 5월경 피고가 사건본인들과 함께 본가에 방문했을 때, 피고는 사건본인1과 함께 게임을 했는데 여러 차례 사건본인1에게 패하자 수차례 욕을 하고 사건본인1의 몸을 온 몸으로 째어 눌렀다. 사건본인1이 울다가 할머니에게 전화를 한다고 하자 피고는 사건본인1의 허벅지를 발로 3회 구타하고, 목을 발로 밟아 째어 누르고, 등을 발로 차는 등 온 몸을 마구 폭행한 후 사건본인 1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위 사건으로 피고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청주지방법원 2022. 7. 2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2022. 10. 31.까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2. 8.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씩을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5. 피고는 2022. 8.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 가. 일정 : 매월 2회, 첫째 및 셋째 주 토요일 13:00부터 그 다음날 18:00까지(숙박)
 - 나. 방법 :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고,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마친 후 다시 위 주거지로 데려다 주는 방법
 - 다.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추후 위 일정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라. 원고와 피고는 서로 위 가.항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늦어도 면접교섭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미리 알린 후 서로 협의하여 변경한다.
 - 마.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 바. 원고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6.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청주지방법원 2022즈기○○, 2022즈기□□ 각 사전처분 신청 사건을 취하하기로 한다.
7.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외도 의심받자 가출하여 20년째 연락두절인 아내와의 이혼

법률구조 2022-1-196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60대)는 피고(여, 50대)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자녀 2명을 두고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2001년경 원고로부터 원고의 직장 동료와 외도한 것으로 의심을 받자 같은 해 가을경 위 직장 동료와 함께 가출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소재를 수소문하였지만 찾지 못하였고, 피고는 어린 자녀들에게조차 연락이 없었다. 성년이 된 자녀들도 더이상 피고를 기다리지 말라며 원고에게 이혼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1. 1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부에 대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2-1-307

담당 : 전해경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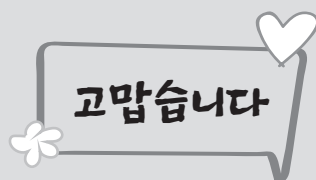
내용 : 채권자(여, 30대)와 채무자(남, 30대)는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녀(남, 10대)를 두었으나, 2018년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무자가 지정되었으나, 2021년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 결정을 받아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채권자로 변경하여 2021년 2월경부터 채권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또한, 채권자가 양육비변경 청구를 하여 채무자는 2021년 5월부터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로 채권자에게 매월 55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채무자는 판결 받은 금액보다 적은 양육비를 불규칙적으로 지급하던데 2021년 9월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자녀는 발달장애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에 양육비의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미지급

양육비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울산가정법원 2022. 11. 21.)

1.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25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3년 3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권영덕,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희, 유문숙, 이병주, 홍진범 님

• 야간상담을 해주신

김소이, 방선영,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 다문화가정 영어상담을 해주신

배선경 변호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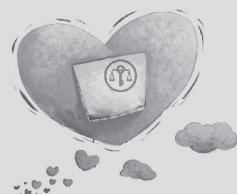
• 학생 자원봉사

고원진, 권수민, 김가영, 김기운, 김민선, 김민재, 김민주, 김상은, 김선옥, 김연주, 김유진1, 김유진2, 김이훈, 김재형, 김정민, 김지오, 나단비, 남현주, 라민정, 류채현, 박민제, 박수민, 박인아, 박진희, 박태희, 서정훈, 성은별, 신연우, 신영혜, 신정원, 오정민, 원지수, 유지수, 이다연, 이다이, 이서현, 이소윤, 이수비, 이승영, 이양현, 이영호, 이유정, 이은세, 이지민1, 이지민2, 이현아, 이혜원, 임수빈, 장주원, 장지수, 전해미, 정다원, 정재은, 최신양, 최준영, 하유지, 한봄이, 한아름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님



2023년 4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4월 10일, 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3년 2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12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사전예약 접수만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방법 :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 / 대면강의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4월 27일	분노는 과학이다.
5월 25일	인간답게 살기 위한 선행 조건인 자율성
6월 22일	관계에서의 상처
7월 27일	공감능력
8월 24일	폭력적인 배우자에 대항하는 법
9월 21일	의심, 피해망상, 그리고 조현병
10월 26일	마음이란 무엇인가?
11월 23일	부부대화법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3년 8월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등지교실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5시
- ▶ 대상 : 서울가정법원 등 보호처분 대상자
- ▶ 진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 의 제 목	강사
4월 12일	우울 : 자꾸 어긋나는 일들,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이서원 소장 (한국 분노관리 연구소)
5월 10일	열등감 : 나보다 잘난 너, 나 잘난 맛에 살고 싶다	
6월 14일	후회 : 원하지 않았지만 일어난 일, 현명하게 살고 싶다	
7월 12일	매사 불만족과 관계갈등을 초래하는 성격장애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 학과)
8월 9일	시간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는 고통, 트라우마	
9월 13일	삶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기분장애	
10월 11일	존재를 삼킨 타인의 시선, 불안장애	
11월 8일	모든 걸 끝장내겠다는 충동, 불안조절장애	
12월 13일	갈망에서 시작된 절망, 중독장애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에 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4년 1월 16일(화)~18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혼인 관련 법률/이혼관련 법률/부모·자녀 관련 법률/후견 관련 법률/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일시 ▶
2023년 8월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SAMSUNG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